

개정세법 해설

2013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머리말

2013년도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복지수요 증가 등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의 선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째,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R&D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였습니다.
- 둘 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 하였습니다.
- 셋 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R&D 비용 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넷 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100세 시대에 대비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등을 통해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제고하였습니다.

국세공무원 모두가 개정세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국 세 청 장 김 덕 중

차례

1. 국세기본법	7
2. 국세징수법	27
3. 소득세법	35
- 총괄·사업소득 분야 / 35	
- 근로소득 분야 / 53	
- 연금소득 분야 / 65	
- 퇴직소득 분야 / 93	
- 금융소득 분야 / 115	
- 양도소득세 분야 / 125	
4. 법인세법	151
- 법인세 분야 / 151	
- 국제조세 분야 / 189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9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3
7. 종합부동산세법	253

8. 부가가치세법	261
9. 주세법	295
10.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309
11. 조세특례제한법	321
- 종합소득세 분야 / 321	
- 양도소득세 분야 / 337	
-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349	
- 종합부동산세 분야 / 353	
- 법인세 분야 / 359	
- 원천세 분야 / 423	
- 국제조세 분야 / 429	
- 부가가치세 분야 / 447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분야 / 475	
- 근로장려세제 분야 / 489	

국세기본법

* 집 필 진

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양 수 영
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찬
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필

◎ 문의사항 : ☎ (02) 397-7544~5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	10
2.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11
3.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12
4.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13
5.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14
6. 납세조합의 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 변경	15
7.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16
8. 기한후 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확대	17
9. 심사·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시 처리절차 명확화	18
10.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유 추가	19
11.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	20
1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21
13.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22
1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23
15.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24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 납세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한 경우 전자송달 신청 간주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증여세 포탈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 5억원 이상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 심사·심판청구의 중복 제기시 처리절차 명확화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1억원 → 10억원)
-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4호) : 2013.1.1.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366호) : 2013. 2.15. 공포

0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자진납부 시 해당 세액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납세자가 필요시 홈택스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불편 해소와 행정비용 절감 도모
- 부과결정·고지하는 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세액에 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송달* * 전자송달 : 이메일, 홈택스를 통해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등 송달 ☐ 납세자의 신청 필요 <단서 신설>	☐ 전자송달 신청 간주 ☐ (좌 동) - 단, 납세고지서 송달 전에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세액을 확인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액 자진납부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02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부담부증여재산 파악 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나. 개정내용

중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 일반적인 경우 : 5년 ○ 무신고 : 7년, 부정행위 : 10년 ※ 상속·증여세 - 일반적인 경우 : 10년 -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 : 15년	☐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상속·증여세와 일치 ○ 5년 → 10년 ○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 : 1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03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과 같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단,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의 경우 15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과제척기간 연장 ○ (사유)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 제3자 명의의 피상속인 등의 재산을 상속인 등이 보유한 경우 등 ○ (기간)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를 안 날 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 연장 사유·대상 확대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50억원 이상)을 수증자가 보유, 사용·수익한 경우 추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04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고액채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 5년	☐ 소멸시효 기간 연장 ☐ 5억원 미만 국세채권 : 5년 ☐ 5억원 이상 국세채권 : 10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05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거짓 증빙 등을 통하여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 현재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음
 -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 (사유) ·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 가> - (계산) ① + ② ① 부당과소신고분 : 산출세액 ×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 총 과세표준) × 40% ② 일반과소신고분 : 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 총 과세표준) × 10% <추 가>	☐ 부당감면가산세 ☐ (좌 동) - (사유) · (좌 동)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 (계산) ① + ② + ③ ① (좌 동) ② (좌 동) ③ 부당감면·공제분 : 부당감면·공제세액 ×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6 납세조합의 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 변경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의무자와 달리 납세조합은 소득 지급자가 아니므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 → “징수한 세액”으로 규정하여
 - 납세조합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조합의 불성실가산세 ○ (사유) 납세조합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미·과소납부한 경우 ○ (계산)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 × 0.03% × 미납일(10% 한도)	☐ 가산세 부과 사유 변경 ○ 징수하여야 할 세액 → 징수한 세액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07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 개정(2012.1.1.)으로 주주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해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는 단순협력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한도를 적용할 필요
- 계산서 부당발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고의성 있는 단순협력의무위반이므로, 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 가산세 한도 : 1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 ☐ 「법인세법」의 경우 -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추 가> - 계산서 부당발급불성실가산세	☐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 (좌 동) ☐ 「법인세법」의 경우 - (좌 동)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2013.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계산서 부당발급불성실가산세 : 2013.1.1. 이후 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08 기한후 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 개정취지

-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 적용 배제

*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50%), 6개월~1년 이내(20%), 1년~2년 이내(10%)
- 기한후신고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 1~6개월 이내(20%)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한후 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 사유 ☐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한 경우 <추 가>	☐ 배제 사유 확대 ☐ (좌 동) ☐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9 심사·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시 처리절차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세기본법」에서 동일 처분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여 중복 제기사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심사·심판청구 ☐ 중복 제기 불가 <추 가>	☐ 중복 제기 시 효과 규정 ☐ (좌 동) - 후행 청구(동시 제기 시 심사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

10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유 추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관할에 관계없이 조사·과세한 세무서장이 상이한 경우에도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료 확보 등을 용이하게 하여 심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 같은 지방국세청장 관할로 조사·과세한 세무서장이 상이 ☐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유 추가 ☐ (좌 동) ☐ 관할에 관계없이 조사·과세한 세무서장이 상이(과세처분한 세무서의 관할 지방청에서 담당)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이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사례 : 법인 소재지인 용인세무서에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던 중 소득의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이뤄져 대표이사 소재지인 강남세무서에서 과세처분을 한 경우, 대표이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종전에는 강남세무서에서 이의신청을 처리함에 따라 용인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함 → 서울지방청에서 이의신청을 처리하도록 하여, 이의신청 처리에 필요한 과세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함

11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소재 불명 또는 해외 출국 등에 따라 사실상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조사중지 사유에 추가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중지 사유 ☐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어려움,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질병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 압수·영치 ☐ 국외자료의 수집 등에 따라 외국과세기관과의 협의 필요 ☐ 장부·서류 등의 은닉, 노동쟁의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납세자보호관 등이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추 가>	☐ 세무조사 중지 사유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납세자의 소재 불명·해외출국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세무조사의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 탈세제보 등의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 → 10억원으로 인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포상금 지급 ☐ (대상)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한도) 1억원	☐ 지급한도 인상 ☐ (좌 동) ☐ 1억원 → 10억원으로 인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3.1.1.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고소득 자영업자의 주된 탈세수단이 되고 있는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포상금 지급 사유 ○ 탈루세액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신고 ○ 타인 명의 사업자 신고 ○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한 자료 제공 <추 가>	☐ 포상금 지급 사유 추가 (좌 동) ○ 법인,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 신고 ☐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방법 ○ 차명계좌의 신고로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확인한 경우 건당 50만원 포상금 지급 ○ 지급한도 : 연간 5,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가. 개정취지

- 제재 강화를 통한 제도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명단공개 대상자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대상 조세범 <추 가>	☐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좌 동)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3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부터 적용

15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5항·제18항)

가. 개정취지

-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과 형사처벌이 도입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율을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금액의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도 1억원) <table> <tr> <th>과태료금액</th><th>지 급 륜</th></tr> <tr> <td>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td><td>100분의 5</td></tr> <tr> <td>2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td></tr> <tr> <td>5억원 초과</td><td>1천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td></tr> </table> ○ 과태료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 제외	과태료금액	지 급 륜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 신고의무 위반 제재방법에 따라 지급 기준을 구분(한도 10억원) ① (과태료, 벌금형) 과태료, 벌금액의 일정 금액 <table> <tr> <th>과태료금액등</th><th>지 급 륜</th></tr> <tr> <td>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td><td>100분의 15</td></tr> <tr> <td>2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td></tr> <tr> <td>5억원 초과</td><td>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td></tr> </table> ② (징역형)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금액을 산정한 후 ①의 기준을 적용 ○ (좌 동)	과태료금액등	지 급 륜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과태료금액	지 급 륜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과태료금액등	지 급 륜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종 전	개 정
☐ 포상금 지급시기 ○ 해당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 -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 :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추 가>	☐ 형사처벌 등 지급시기 추가 ○ (좌 동) -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양 수 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필

◎ 문의사항 : ☎ (02) 397-7544~5

1.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30
2. 재기 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	31
3.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범위 조정	33
4.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	34

국세징수법

주요 개정 내용

-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 재기 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
-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범위 조정
-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120만원 → 150만원 미만)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5호) : 2013.1.1. 공포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7호) : 2013. 2.15. 공포

01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가. 개정취지

- 원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직면하여 발주자인 국가 등과 원·수급사업자간 합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하도급법」 §14①2호)에도
 -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만으로 발주자인 국가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 국가, 지자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14①1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14①1호 → 1호 및 2호* * 발주자(국가 등)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02 재기 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의 목적인 금융위·중기청의 재창업자금 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소규모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징수유예기간 확대
- 사업과 관련없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도 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특례 대상 세목을 제한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일몰을 종료함. 다만,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징수유예기간 특례 ○ (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 - (수입금액) 직전년도 6억원 이하 - (채납) 1년간 3회미만 채납, 채납액·결손처분액(3년간) 500만원 미만 - 조세범처벌 사실 없을 것(5년간) - 세법상의무이행자(복식부기기장의무 등)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특례 ○ 재기 중소기업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6억원 → 10억원 - 500만원 → 1천만원 - (좌 동) - (좌 동)

종 전	개 정
○ (징수유예기간 등) - (기간) 18개월 ※ 일반 징수유예 기간 : 9개월 - (대상세목) 제한없음 ○ (일몰) 2012.12.31.	- (좌 동) - (대상세목) 제한없음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로 제한 ○ (일몰 연장) 2013.12.31.까지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하여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3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범위 조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가. 개정취지

- 채납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국세징수법」상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압류금지재산 범위 조정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i)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ii) 치료·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iii) 그 외 보험금의 50% iv)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 v)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 둘 이상 보험계약시: i), iv), v)는 합산하여 계산, iii)은 보험계약별로 계산
○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	○ 12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04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월 1,495,550원('12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채납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제한금액을 월 120만원 → 150만원으로 인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 120만원 미만 금액	○ 120만원 → 15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총괄·사업소득 분야)

*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재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원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황종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호필

● 문의사항 : ☎ (02) 397-7552~4

1.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38
2.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39
3. 부동산서비스업 등 업종분류 합리화	40
4. 인적용역소득자의 업종구분 명확화	41
5.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42
6.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43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 명확화	44
8.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45
9.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46
10.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47
11. 기부금 표본조사 기본계획 제출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48
1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	49
13. 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개선	50
14.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51
15. 국고보조금 처리 기준 명확화	52

소득세법 (총괄·사업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 신설
-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 전자계산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 임목·임지 일괄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세부담 회피사례 방지를 위해 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 개선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1호) : 2013.1.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6호) : 2013.2.15. 공포

01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가. 개정취지

-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신 설>	☐ 비과세 범위 확대 ☐ (좌 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6조의2 제7항, 제51조, 제55조, 제57조)

가. 개정취지

-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조문정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운용수익은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저축성보험차익(이자소득) ☐ 퇴직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은 제외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배당소득) ☐ 퇴직일시금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배금은 제외 ☐ 총수입금액의 범위(사업소득) ☐ 퇴직보험의 보험차익 ☐ 퇴직일시금신탁 이익·분배금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 ☐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 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에 가산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이자 또는 배당 등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 <삭 제> ※ 퇴직금전환제도 종료에 따른 조문정리 (단, 부칙에 경과조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43조, 제208조)

○ 매출액 등 업종 성격을 감안하여 분류기준 적용을 합리화

종 전	개 정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매매업 : (가) 군 ☐ 부동산임대업 : (다) 군 ☐ 부동산서비스업 및 동산임대업 - (가) 군* 기타 * 외부조정 등 각종 의무 부과시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업종 분류 조정] ☐ (좌 동) ☐ 부동산서비스업 및 동산임대업 - (가) 군 → (다) 군
☐ 도매 및 소매업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도매 ☐ 상품중개업 ☐ 소매업(자동차 제외)	☐ 업종 분류 조정] ☐ (좌 동) ☐ 상품중개업 - (가) 군 → (나) 군 ☐ (좌 동)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4 인적용역소득자의 업종구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업종 분류 명확화

* 저술·강연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대가를 받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 ☐ <추 가>	☐ 대상업종 추가 ☐ (좌 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현행 업종별 의무제도 구분 기준>

업종 구분	성실신고 확 인	복식부기	외부조정	소득금액 추계계산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30억원	3억원	6억원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5억원	1.5억원	3억원	3.6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5억원	7.5천만원	1.5억원	2.4천만원

05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 수입 : 주택 또는 토지 매매가액 ☐ 비용 - 취득가액 - 양도자산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 <추 가>	☐ 비용항목 추가] ☐ (좌 동)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6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추 가>	☐ 대상 확대 ☐ (좌 동) ☐ 음료품 배달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가. 개정취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 30만원 이상 재화·용역 공급시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 ○ (제재)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의무발급 대상 명확화 ○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08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가. 개정취지

- 추계신고자의 급격한 세부담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상한배율* 적용 ☐ (적용대상)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 신고자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소득상한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 ☐ (적용기한) 2012.12.31.까지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015.12.31.까지 (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9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7항·제8항·제9항)

가. 개정취지

- 전자계산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계산서* 발급·보관 ○ 작성 및 발급 가능 * 사업자가 계산서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에 전송(발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계산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7항) ○ (제출) 국세청 전송근거 없음 ○ (보관) 전자계산서 보관(5년) ☐ 전자계산서 발급분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 (좌 동) ○ 국세청에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가능 ○ 보관 의무 면제 ☐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4.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10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가. 개정취지

-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 0.2% ☐ 사실과 다르게 기재 : 2% ※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	☐ 기준 명확화 ☐ (좌 동) ☐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기부금 표본조사 기본계획 제출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5월말)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제출일을 8월말로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표본조사 ☐ (대상) 기부금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조사 비율) 표본조사 대상의 0.1% ☐ (기본계획 제출일) 매년 3월말	☐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 (좌 동) ☐ 0.1% → 0.5% ☐ 매년 3월말 → 8월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1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자원봉사 활동분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범위 ○ 중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자원봉사 활동분	☐ 범위 확대 ○ 선포 후 → 선포 전·후

13 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임목·임지 일괄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세부담 회피사례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목과 임지를 일괄양도하여 각각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계산방법 ○ (임지) 기준시가 ○ (임목)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기준시가)을 차감한 잔액	☐ 계산방법 변경 ○ (임지)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기준시가)을 차감한 잔액 ○ (임목) 기준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양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등 : 다음연도 2월 말일 ○ 원천징수 사업소득, 근로·퇴직소득 : 다음연도 3.10.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	☐ 제출시기 조정 ○ 봉사료 : 2월 말일 → 3월 10일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15 국고보조금 처리 기준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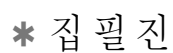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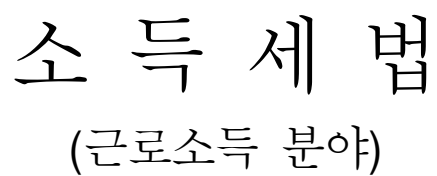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후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시 일시상각 충당금 계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 ○ 기한내에 자산 미취득 또는 폐업시 수입금액 산입 ○ <신 설>	☐ 수입금액 산입 기준 명확화 ○ (좌 동) ○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후 양도 또는 폐업시 수입금액 산입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재 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필

☎ 문의사항 : ☎ (02) 397-7552~4

1.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54
2.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57
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58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59
5. 원양·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60
6. 국외건설 감리업무 수행자 비과세 범위 명확화	61
7.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62
8.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비과세	63

소득세법 (근로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교재비, 방과후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 원양·외항 선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비과세 한도 인상
-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1호) : 2013.1.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6호) : 2013.2.15. 공포

01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한부모 소득공제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 ○ 공제금액 : 연 100만원 ○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세 지출액 소득공제 ○ (적용요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공제율) - 월세 지출액의 40%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월세 지출액 공제율 인상 ○ (좌 동) ○ (공제율) - 월세지출액 : 40% → 50%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 ☐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교과서대금(초 · 중 · 고등학생) ☐ 교복구입비용(중 · 고등학생) ☐ 급식비(초 · 중 · 고등학생) - <추 가> ☐ 초 · 중 ·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료 - 교재비 제외 - <추 가>	☐ 대상 확대 } ☐ (좌 동) ☐ (좌 동)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 (좌 동) - 교재비* 포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 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 학교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 가>	☐ 비과세대상 확대 ☐ (좌 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text{육아휴직 급여액} \times \frac{\text{단축 전 근로시간} - \text{단축 후 근로시간}}{\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5 원양·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장기간 해외 선박근무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국외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한도 인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일반) 월 100만원 ○ (원양·외항 선원) 월 200만원 ○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인상 ○ (좌 동) ○ 월 200만원 → 월 300만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6 국외건설 감리업무 수행자 비과세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자도 국외건설근로자에 포함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일반) 월 100만원 ☐ (원양·외항 선원) 월 200만원 ☐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비과세 대상 명확화 ☐ 건설근로자 및 감리업무 수행자 포함

07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요건 -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 총급여 2,000만원 이하 ○ 비과세대상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요건 - (좌 동) - 월정액급여 100 → 150만원 이하 - 총급여 2,000 → 2,500만원 이하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8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비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7호)

가. 개정취지

-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이전지원금은 지방이전에 따른 실비변상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급여인 점을 고려하여 비과세대상에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 <추 가>	☐ 비과세 대상 확대 } ☐ (좌 동) ☐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illegible]

☎ 문의사항 : ☎ (02) 397-7552~7554

1. 연금소득의 유형 재분류	68
2.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조정 및 확대	69
3.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	70
4. 연금계좌의 범위	71
5. 연금저축계좌의 취급기관 및 계약의 범위	72
6. 연금계좌 가입 및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완화	73
7. 연금수령요건 개선	74
8. 연금수령한도 신설	75
9.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신설	76
10. 연금계좌간 이체요건 보완	77
11.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범위	79
12. 연금계좌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82
13.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범위 명확화	85
14. 공적연금 과세체계 정비	86
15. 연금소득 등 수입시기 조정	89
16. 연금계좌 과세제외금액의 확인절차 등	90
17.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92

소득세법 (연금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1) 연금소득 유형 재분류 및 연금계좌 체계 정비

- 연금의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규정함으로써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등 연금소득의 유형 재분류
- 개별 근거법에 따른 사적연금 계좌를 통합하고, 연금계좌 가입 및 연금보험료 납입조건 완화하는 등 연금계좌 범위 및 수령요건 등 연금계좌 체계 정비
- 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요건을 개선하고, 한도를 신설하였으며, 연금계좌간 이체요건을 보완함

(2) 연금소득 원천징수 체계 정비

-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사적연금으로 확대하고, 연령 및 유형에 따라 원천세율 차등 적용하는 등 연금소득 원천징수 체계 정비
- 공적연금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확대, 연금 및 일시금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공적연금 과세체계 정비
- 연금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체계 정비에 따른 절차 규정

(3) 연금계좌 상속에 따른 과세체계 신설

- 배우자 사망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계좌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1호) : 2013.1.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6호) : 2013.2.15. 공포

01 연금소득의 유형 재분류

(소득세법 제20조의3)

가. 개정취지

- 연금소득을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규정함으로써 연금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소득의 유형을 지급근거에 따라 열거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교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령 ○ 퇴직보험금에 따른 연금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따른 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법률」에 따른 연금 ○ 기타 유사한 연금	□ 연금소득의 유형을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재분류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다음의 소득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연금수령으로 개별 원천소득이 연금소득으로 전환 (1) 퇴직소득 과세이연분 (2) 연금계좌 자기불입분 (소득공제 받은 분에 한함) (3) 연금계좌 발생 운용수익 (4) 그 밖에 연금계좌에 과세이연된 소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①·② 외 법률에 따라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연금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2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조정 및 확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연금소득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소득 분리과세 ☐ 적용대상 : 공적연금* + 사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한도 : 연간 600만원	☐ 분리과세 적용확대 ☐ 적용대상 : 사적연금 ☐ 한도 : 연간 1,2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3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퇴직금 등을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인하여 고령화에 대비한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공적연금 : 간이세액표 세율 ○ 사적연금 : 5%	☐ 원천징수세율 인하 ○ (좌 동) ○ 사적연금 : 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령 및 유형</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일반적인 경우</td><td>5%</td></tr> <tr> <td>종신형 수령, 70세 이후 수령</td><td>4%</td></tr> <tr> <td>퇴직소득 수령, 80세 이후 수령</td><td>3%</td></tr> </tbody> </table> * 중복적용시 유리한 세율 적용	연령 및 유형	세율	일반적인 경우	5%	종신형 수령, 70세 이후 수령	4%	퇴직소득 수령, 80세 이후 수령	3%
연령 및 유형	세율								
일반적인 경우	5%								
종신형 수령, 70세 이후 수령	4%								
퇴직소득 수령, 80세 이후 수령	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4 연금계좌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적연금의 유형을 연금계좌로 통합하고, 일반 계좌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연금저축” 표시의무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적연금의 유형 ○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개별 근거법에 따라 구분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 연금저축(연금·기타소득)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 퇴직연금(연금·퇴직소득) ③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 퇴직연금(연금·퇴직소득) <신 설>	☐ 사적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①+②)로 통합 ○ 개별법이 아닌 소득원천별로 소득구분하는 근거 마련 * 사용자부담, 자기부담, 운용소득 등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① 연금저축계좌 * 종전 연금저축계좌와 동일 ②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계좌(DC, IRP → DB는 제외) *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표시 의무 ○ 연금저축계좌 설정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 사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 분부터 적용
 단, 2013.1.1. 이전에 가입한 퇴직보험,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계좌는 연금계좌로 간주

05 연금저축계좌의 취급기관 및 계약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의 취급기관을 「소득세법 시행령」 금융소득 분류체계에 맞춰 재조정 하고,
 - 연금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연금지급 등 연금계좌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므로, 연금관리가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를 연금계좌 취급기관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저축 취급기관 ① 신탁업자 (신탁에 한함) ② 집합투자업자 ③ 투자회사 ④ 보험회사 ⑤ 체신관서 (우체국보험) ⑥ 수협조합·중앙회, 신탁중앙회, 새마을금고 연합회(생명공제)	☐ 연금저축계좌 취급기관 및 계약 ① 신탁업자 : 신탁계약 ②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③ 보험회사등* : 보험계약** * 보험회사, 체신관서, 수협, 신탁, 새마을금고 ** 보험계약, 우체국보험계약, 공제계약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부터 적용

06 연금계좌 가입 및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연금보험료 납입규정을 통합하되, 납입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재원 확충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상품 가입대상 ○ (연금저축) 만 18세 이상 ○ (퇴직연금) 연령제한 없음 ☐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연금저축] : (①+②) [퇴직연금] : 세법상 요건 없음 ① 최소 납입기간 : 10년 ② 납입한도(계좌 합계) - 연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 *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신 설>	☐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가입대상 ○ 연령제한 삭제 ☐ 연금계좌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①+②+③) * 가입자가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① 최소 납입기간* : 5년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연금수령 개시일까지 - 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적용 배제 ② 납입한도(계좌 합계) - 연 1,800만원(분기한도 폐지) * (좌 등) ③ 추가납입 불가 - 연금수령개시 후 해당 연금계좌에 대한 추가납입 불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07 연금수령요건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87조의2)

가. 개정취지

- 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노후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상품 연금수령요건 [연금저축] : (①+②+③) [퇴직연금] : 세법상 요건 없음 ① 최소 납입기간(10년) 경과 후 인출 ② 55세 이후 인출 ③ 5년 이상에 걸쳐 인출 <신 설>	□ 연금계좌 연금수령요건 개선[일반 연금수령요건] : (①+②+③) ① 최소 납입기간(5년) 경과* 후 인출 * 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 미적용 ② 55세 이후 연금개시신청* 후 인출 * 연금수령하려는 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신청서 제출 * 연금계좌취급자는 국세청에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내역 제출 ③ 연간 연금수령한도(신설) 내 인출 [종신 연금수령요건] : (①+②+③+④) ①~③ 일반 요건 ①~③과 동일 ④ 사망일까지 수령하며, 수령기간 중 해지 불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08 연금수령한도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가. 개정취지

- 연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균등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 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연금수령개시일 **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한도 미적용
<신 설>	☐ 연금수령 기산 연차 산정 ○ (원칙)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제1년차 ○ (예외) 다음의 경우 예외 기산연차 적용 - 2013.3.1. 전 가입분* : 제6년차 * 2013.3.1. 전 DB가입자의 퇴직금이 이체되는 경우 포함 - 승계한 연금계좌의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시 연금수령연차
<신 설>	☐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시 소득구분 ○ 한도 내 금액 : 연금소득 ○ 한도초과금액 : 퇴직·기타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09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시 소득원천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출 순서를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 ○ 연금수령시 연금개시일의 과세비율로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 $\text{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과세대상금액*}}{\text{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재원 총평가액}}$ * 과세이연된 퇴직금, 자기불입금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 운용수익 ☐ 과세대상 연금외소득 산정 ○ 해지 및 연금외수령시 수령일 현재 과세비율로 산정 $\text{연금외수령액} \times \frac{\text{수령일 현재 과세대상금액}}{\text{수령일 현재 연금재원 총평가액}}$ ○ 연금외소득은 계좌유형에 따라 소득 구분 ① 퇴직연금계좌 → 퇴직소득 ② 연금저축계좌 → 기타소득* * 단, 사망으로 인한 일시금은 연금소득	☐ 연금계좌의 소득원천에 따른 인출 순서* (① → ② → ③ 순) * 연금수령·연금외수령 모두 해당 ① 과세제외금액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퇴직소득 포함) ③ 그 밖의 소득금액 (소득공제액 + 운용소득) ☐ 인출금액은 수령방법에 따라 소득구분 ○ 연금수령 ⇒ 연금소득 ○ 연금외수령 ⇒ 퇴직·기타소득 ☐ 인출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인출 순서 ○ 연금수령분 → 연금외수령분 순으로 인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연금계좌간 이체요건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가. 개정취지

- 연금가입자에 대해 연금상품을 변경할 기회 제공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저축 계좌 이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8항) ○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 이체시 ⇒ 해지로 보지 않음 □ 퇴직연금간 계좌 이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이체를 통해 전부 이전시 * IRP, DC형 퇴직연금 계좌 ⇒ 퇴직소득의 발생(인출)으로 보지 않음	□ 연금계좌간 이체 ○ 연금수령개시 전의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음 ○ 다만, 다음의 이체는 적용 제외 ① 신계좌*의 구계좌 이체 * 2013.3.1. 이후 가입 계좌 ②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간 상호 이체 ③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이체 □ 일부 금액 이체시 이체순서 ○ 연금계좌 인출순서 준용 (① → ② → ③ 순) * ① 과세제외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③ 그 밖의 소득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체시 연금계좌 가입일 등 연금계좌 적용 기준 ○ [원칙] 이체받은 연금계좌 ○ [예외] 종전(이체하는) 연금계좌* * (요건) 신규 계좌로 전액 이체 ☐ (절차)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는 ○ 이체와 함께 연금계좌이체확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이체하는 연금계좌 분부터 적용

11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범위

(1)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요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가. 개정취지

- 연금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상품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 ① (퇴직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② (연금저축) - 납입기간 만료 전 해지로 받는 일시금 소득 - 납입기간 만료 후 연금외 형태로 인출하는 소득	☐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요건(①+②) ① 연금수령으로 인출되는 금액이 아닐 것 → “연금외수령”일 것 ② 사용자부담금이 아닐 것 →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소득 ※ 사용자부담금의 연금외수령은 퇴직소득에 해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13.1.1. 전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그에 대한 운용소득은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구분

(2)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나목, 제129조 제1항 제6호)

가. 개정취지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상품 연금외인출*시 과세방법 * 해지에 따른 인출 포함 ① 퇴직연금 : 퇴직소득 ② 연금저축 : 기타소득* 또는 연금소득** *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되,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사망으로 인출되는 경우에 한하며, 5% 세율로 원천징수하되, 6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연금계좌* 연금외수령**시 과세방법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해지도 연금외수령의 한 유형 ○ 인출 사유 및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취급 <table><tr><th>소득원천</th><th>소 득 구 분</th><th>일반연금외 수 령</th><th>부득이한 연금외 수 령</th></tr><tr><td>사 용 자 부 담 금</td><td>퇴 직</td><td>기본 세율</td><td>기본 세율</td></tr><tr><td>자 기 부 담 금</td><td>기 타</td><td>20%</td><td>15%</td></tr><tr><td>운용수익</td><td>기 타</td><td>20%</td><td>15%</td></tr><tr><td colspan="2">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과세방법</td><td>종합과세</td><td>분리과세</td></tr></table>	소득원천	소 득 구 분	일반연금외 수 령	부득이한 연금외 수 령	사 용 자 부 담 금	퇴 직	기본 세율	기본 세율	자 기 부 담 금	기 타	20%	15%	운용수익	기 타	20%	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과세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소득원천	소 득 구 분	일반연금외 수 령	부득이한 연금외 수 령																		
사 용 자 부 담 금	퇴 직	기본 세율	기본 세율																		
자 기 부 담 금	기 타	20%	15%																		
운용수익	기 타	20%	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과세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기타소득 분부터

※ (경과조치) 2013.1.1. 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가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3)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가. 개정취지

- 연금계좌 해지시 15% 저율 분리과세(기타소득)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을 조정하여 연금재원을 확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 기타소득으로 과세(20%)하나 사망으로 해지시 연금소득 과세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③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④ 연금취급자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⑤ 퇴직, 해외이주, 폐업 <신 설> ☐ (절차)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 시행규칙 서식으로 규정	☐ 연금계좌를 연금외수령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조정 * 기타소득으로 과세(20%)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15% 분리과세 ① ~ ④ (좌 동) ⑤ 해외이주 ⑥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절차)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 관련 확인서류를 구비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2 연금계좌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1) 배우자 상속시 과세특례 신설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제7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배우자 사망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상속인의 연금수령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시 과세특례 ※ 연금계좌 상속시 과세문제 (①+②) ① 소득세 정산 : 연금계좌 잔액 일시 인출 ② 상속세 과세 : 소득세 정산 후 재산가액을 상속 ○ 피상속인의 연금수령 지위를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에 따른 소득세 정산 없이 연금소득세 납세의무 이행 - 다만, 배우자(상속인)가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상속되는 연금계좌분부터 적용

(2) 승계 범위 및 절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항·제2항, 제40조의2 제4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배우자 사망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상속인의 연금수령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상속인(배우자)의 연금계좌 승계 ○ 승계한 날에 상속인이 연금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간주 ① 연금개시 및 원천세율 ⇒ 상속인 기준(연령) 적용 ② 피상속인이 연금개시한 경우에도 추가 납입 가능 ○ 단, 다음 사항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 －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 납입요건(5년)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 연금수령연차 산정을 위한 기산연차* *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를 상속인의 기산연차로 함 ☐ (절차)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 * 승계신청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승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상속되는 연금계좌분부터 적용

(3)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시 세액정산 방법 및 절차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의조2 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연금계좌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과 승계신청일 또는 사망확인일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도록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등의 납세편의를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금계좌 가입자 사망시 세액정산 ○ 연금계좌의 승계신청이 있는 경우 － (정산대상)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 소득 상속인 기준 적용 세액·피상속인 기준으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연금계좌의 승계신청이 없는 경우 － (정산대상) : [① + ②] ①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소득 *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사망일부터 6개월) 이전인 경우 : 승계신청 기한의 말일 또는 상속인의 연금외수령일 ②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남아있는 소득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외수령 가정시 세액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상속되는 연금계좌분부터 적용

13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제51조의3)

가. 개정취지

- 소득공제 대상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 ☐ 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 ☐ 사용자가 납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 (한도) 세법상 한도 없음 * 단,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에 납입비율이 있어 한도의 역할을 함 ② (퇴직연금 +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 (한도) 연 400만원(인별적용) <신 설>	☐ 소득공제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 (좌 동) ① (좌 동) ②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 (한도) (좌 동) －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기부담금의 범위 (1) 지급받은 퇴직금을 환급받기 위해 납입하는 경우 (2) 연금계좌간 이체를 위해 납입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14 공적연금 과세체계 정비

(1)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확대 (소득세법 제143조의4 제5항)

가. 개정취지

- 공적연금이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하도록 함

* 근로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하고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대상 ○ (시기) 다음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 또는 환급 ○ 단, 6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 없이 연말정산한 것으로 간주	☐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대상 확대 ○ (좌 동)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2조의2 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과세기준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납입 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과 기과세분을 반납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연금소득 계산] □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 2002.1.1.(과세기준일) 이후 적립금에 대해서만 과세 $\text{연금 수령액} \times \frac{\text{과세기준일 이후 기간}}{\text{전체기간 금액}}$ － 단, 공적연금 유형에 따라 비율산정 방식 상이 * 「국민연금법」: 환산소득 * 「공무원연금법」 등: 납입월수 □ 국민연금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 보험료 중 과세제외 기여금 등이 있는 경우 ○ 소득공제비율*을 추가로 곱하여 계산 $1 - \frac{\text{소득공제 받지 않은 기여금 등 누계액}}{\text{과세기준일 이후의 연금보험료 누계액}}$	(좌 동) □ 공적연금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보험료 중 과세제외 기여금 등이 있는 경우 ○ 미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차감 * 과세제외 기여금 등이 해당 과세기간 연금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연금 소득에서 차감

종 전	개 정
☐ 직역연금 일시금 반납분*에 대한 처리 * 퇴직소득세 기과세분 ① 일시금 반납후 연금수령시 해당 재직 기간분 과세 제외 ② 직역연금에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연금소득 계산 [퇴직소득 계산] ☐ 공적연금 일시금의 계산 ① (원칙)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보험료*와 (가산)이자**의 합계 * 사용자부담분 + 자기부담분 ** 연금보험료에 가산되는 금액 ② 반환일시금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 * 유족연금을 받던 자가 일시금을 받는 경우 한도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 비율 ☐ 공적연금소득 계산시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 일시금반납에 따른 과세제외 등 규정 ⇒ 일시금 계산시 준용	①・②를 통합 - 반납 일시금을 과세제외 기여금 등으로 보아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차감 ☐ 과세대상 공적연금 일시금 : Min(①, ②) ① (좌 동) ② 한 도 - 과세기준일 이전 수령액 - 납입 연금보험료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연 금) 2013.2.15. 이후 개시되는 연금부터 적용
- (일시금) 2013.2.15. 이후 발생하는 일시금부터 적용

15 연금소득 등 수입시기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9조, 제50조)

가. 개정취지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를 연금유형에 따라 구분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 중도해약일, 연금외수령일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삭 제> ※ 개인연금저축 일몰종료에 따른 조문정리 (기계약분 경과조치)
☐ 연금저축 해지 및 연금외수령 : 지급받은 날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기타 소득 : 연금외수령일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원칙) 퇴직한 날	○ (좌 동)
○ 잉여금처분에 따른 지급 : 잉여금처분 결의일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금 : 지급받은 날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삭 제>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① 공적연금소득 : 지급받기로 한 날 ② 연금계좌분 : 연금수령일 ③ 그 밖의 연금소득 : 지급받은 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소득 분부터 적용

16 연금계좌 과세제외금액의 확인절차 등

(1) 과세제외금액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소득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금계좌에 있는 과세제외금액의 범위 및 인출 순서 (① → ② → ③ 순) ①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②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 ③ ①·②외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금액
<신 설>	☐ 과세제외금액의 확인 ○ 당연제외금액(위 ①·②) : 인출자의 입증 필요 없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확인 ○ 확인제외금액(위 ③) : 인출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확인 * 입증방법 및 절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참조 - 확인제외금액은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간주 (경정하지 않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제외금액의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가. 개정취지

-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자료의 신청 ○ 적용대상 : - 공적연금 수령자 - 기타소득 수령자 * 연금지축 및 소상공인 해지 - 퇴직소득 수령자 * 퇴직이연계좌 중도인출 등 ○ 자료제공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도 국세청장에게 자료 제공 신청 가능 - 단, 소득자 동의 필요	□ 과세제외금액 확인절차 및 방법 ○ (적용대상) 다음 중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려는 사람 ① 공적연금 및 일시금 수령자 ②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③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해지하려는 사람(기타소득) ○ 연금보험료등 소득공제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발급받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 - 연금계좌취급자는 다음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 납입액 합계* - 소득공제액 * 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제외 ○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 다음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 ⇒ Min(①, ②) ① [해당 연금계좌 + 다른 연금계좌] 납입합계액 - 소득공제액 ② 해당 연금계좌 납입액 ※ 확인한 과세제외금액은 연금계좌납입명세서에 기재되어 국세청에 통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과세제외금액을 확인받으려는 분부터 적용

17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이용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 적용요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에 한함) - <추 가>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공제대상 소득 - 연금소득 ○ 공제한도 : 연 200만원	☐ 대상 확대 ○ 적용요건 확대 - (좌 동) - 민간은행 역모기지 (주택 요건 없음)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 분부터 적용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a dark grey header bar at the top and a dark grey footer bar at the bottom. The paper appears to be part of a notebook or a document template.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재 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필

☎ 문의사항 : ☎ (02) 397-7552~7554

1.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96
2.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 개선	97
3. 이연퇴직소득세의 계산 및 원천징수	98
4.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개선	99
5.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시 세액계산특례 신설	101
6. 퇴직소득세의 정산 사유 등	102
7. 퇴직소득 일부 수령시 세액계산 특례 폐지	103
8. 퇴직판정의 특례 조정	104
9. 근속연수의 계산 명확화	105
10.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	106
11.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관계 명확화	107
12.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사유 추가	108
13. 근로·퇴직소득 비과세 규정 정비	109
14. 퇴직소득의 소득구분 명확화	110
15. 근로·퇴직소득 범위 조정	111
16.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범위 조정	113
17. 금전 외의 대가로 지급시 총수입금액의 계산	114

소득세법 (퇴직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1) 퇴직소득 구분 명확화

- 퇴직의 범위를 조정하여 퇴직이지만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퇴직이 아니지만 퇴직으로 보는 간주퇴직으로 구분하여 정비
- 급여지급규정 유무에 따른 소득구분 문제 개선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을 명확화하고 범위를 조정
- 불합리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비과세 규정 정비

(2)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과세체계 정비

- 연분연승 적용비율 조정으로 누진과세 정상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
-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소득 귀속시기 일치시키고,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면서 원천징수 관련 규정 정비
-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도록 세액계산 특례규정 신설하고 관련 규정 정비
- 중간정산 등에 적용되는 근속연수 기간을 명확화
-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리·위임관계 명확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1호) : 2013.1.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6호) : 2013.2.15. 공포

01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연분연승 적용비율을 5년 기준으로 조정하여 누진과세 정상화 및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 (① → ② → ③) 순서로 계산 <신 설> ① (연분) 과세표준*/근속연수 * 퇴직소득 - (정물공제 + 근속공제) ② ① × 기본세율(6~38%) ③ (연승) ② × 근속연수	☐ 연분연승 적용비율 조정 ○ (좌 동) ○ 퇴직소득 과표구간 적용시 과표를 5배수로 환산 적용 ① (과세표준 × 5) / 근속연수 ② ① × 기본세율(6~38%) ③ (②/5) × 근속연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 * 퇴직소득 × ('13.1.1. 이후 근속연수 / 전체 근속연수)
 - ※ '13.1.1. 이후 근속연수 계산방법 : (① - ②)
 - ① 전체 근속연수
 - ② '13.1.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근속연수

02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 개선

(소득세법 제146조)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일과 퇴직소득 귀속시기를 일치시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여 퇴직금의 연금재원 활용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금의 과세이연계좌 이체시 과세이연 ☐ 이체된 퇴직소득은 이연계좌 인출시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소득의 이연) ☐ 과세이연 적용요건 (① + ②) ① 퇴직금의 80% 이상을 이체 ② 퇴직한 날부터 60일내 이체	☐ 과세이연 방식 변경 : 소득의 이연 → 세액의 이연 ☐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세액을 과세이연* * 추후 연금계좌에서 인출시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유예 ☐ 적용요건 완화 및 조정 (① 또는 ②) ①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 - 80% 이체 요건 폐지 : 일부 이체도 가능 ②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내 연금계좌로 납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3 이연퇴직소득세의 계산 및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가. 개정취지

- 이연된 퇴직소득이 추후 연금외수령될 때 적절하게 원천징수되도록 규정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연퇴직소득세액의 계산 ○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지급·입금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연 퇴직소득세) $\text{이연퇴직소득세} = \text{퇴직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text{퇴직소득금액*}}$ *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의 방법으로 이연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 세액을 뺀 금액 ☐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text{원천징수할 이연퇴직소득세} = \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times \frac{\text{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① - ② ① 연금외수령 전까지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②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text{인출퇴직소득 누계액에 대한 세액} = \frac{\text{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text{이연퇴직소득 누계액}} \times \frac{\text{인출퇴직소득 누계액}}{\text{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자는 해당 내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퇴직하여 발생한 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04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환급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자에 대한 절차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 퇴직금 입금 내역 및 연금계좌 등 기재 - 원천징수의무자 폐업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	(좌 동)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절차 ☐ 신청받은 환급액은 납부할 원천징수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 ☐ 환급액이 환급월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① or ②) ① 다음 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조정 환급 ② 관할세무서장에 직접 환급신청	(좌 동)

종 전	개 정
<신 설> ○ 퇴직소득을 이연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연금 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즉시 통보	○ 환급방식 신설 － 환급액을 연금계좌 이체 방식 으로 환급 *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05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시 세액계산특례 신설

(소득세법 제148조)

가. 개정취지

-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자 등에 대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 계산			○ 퇴직소득세액 = ① - ②	
구 분	법정 퇴직금	명예 퇴직금	①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	
근속연수	잔여기간*	전체기간	* (최종퇴직금 + 기지급퇴직금)	
장기공제	전체기간 공제액 - 중간정산분 공제액		** 전체 근속연수로 연분연승법 등 적용	
연 분	잔여기간	전체기간	② 기지급퇴직금의 산출세액	
산출세액	연분금액 합산 후 산출		*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연 승	산출세액을 퇴직소득비율로 구분한 후 각각 연승			
* 잔여기간 : 전체기간 - 중간정산기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06 퇴직소득세의 정산 사유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중간지급 등 퇴직소득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정산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세 정산 방법 $[\text{세액 계산}] = [\text{①} - \text{②}]$ ① 합산 퇴직소득의 산출세액 * 전체 근속연수*로 소득공제 및 연분연승법 적용(합산 근속연수 - 중복 근속연수) ② 기지급 퇴직소득 산출세액 * 이미 납부·이연된 세액을 공제 $[\text{근속연수 계산}] : (\text{①} + \text{②}) - \text{③}$ ①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②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③ ①과 ②에서 중복되는 기간 ☐ 퇴직소득세 정산 사유 ① 같은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 ② 공적연금 일시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잔여분을 지급하는 경우	(좌 동) (좌 동) ☐ 퇴직소득세 정산 사유 ① (좌 동) ②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퇴직판정특례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7 퇴직소득 일부 수령시 세액계산 특례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 정산방식 도입*으로 일부 수령시 환산규정 삭제

* 일부 수령시 해당 소득으로만 세액계산 후 추후 잔여 소득 수령시 정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세 정산시 근속연수 : (① + ②) - ③ ①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②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③ ①과 ②에서 중복되는 기간	<삭 제> ※ 제105조 제1항 근속연수 규정으로 이동
☐ 일부 수령시 세액계산 $\frac{\text{수령가능 퇴직소득 산출세액}}{\text{수령가능 퇴직소득}} \times \text{실제 수령한 퇴직소득}$	<삭 제> ※ 세액정산 도입으로 불필요
☐ 적용 사유 ① 일시금과 연금의 분할 지급 ② 연금지급 중 일시금 지급 ③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않은 일부 부분이 있는 경우	<삭 제> ※ 이연방식 변경으로 불필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13.1.1. 전 과세이연(소득이연) 퇴직소득은 종전 규정 적용

08 퇴직판정의 특례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가. 개정취지

- 퇴직이지만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퇴직이 아니지만 퇴직으로 보는 경우 (간주퇴직)를 구분하되, 간주퇴직을 “퇴직소득중간지급” 사유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함 ※ 단, 출자법인간 진출은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①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②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있는 경우 ③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④ 종업원의 중간정산 ⑤ 임원의 연봉제 전환 ⑥ 임원이 무주택자 주택구입 ⑦ 임원의 3개월 이상 질병치료·요양 ⑧ 천재·지변 등 재해	☐ 퇴직의 범위 조정 ☐ 유형별로 [1]과 [2]로 구분 ⇒ [2]를 “퇴직소득중간지급”으로 약칭 [1] 퇴직이지만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요건) 퇴직금을 받지 않을 것 ① (좌 동) ② 법인의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출자법인으로 진출이 있는 경우 ③ (좌 동) [2] 퇴직이 아니지만 퇴직으로 보는 경우 ⇒ (요건) 퇴직금을 받을 것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간정산 사유(임원 포함) *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5년내 파산, 임금 피크제, 천재 지변 등 ② 퇴직금 없이 연봉제 전환 ③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부터 적용

09 근속연수의 계산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중간지급 등에 적용하는 근속연수 기간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적연금 재가입으로 일시금 반납시* 근속연수 계산 * 퇴직소득세 기과세분 ☐ 근속연수 기산일을 재가입일로 산정 ☐ 과세이연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 (① + ②) ① 과세이연되기 전 근속연수 ② ①의 발생 퇴직소득 근속연수 <신 설>	☐ 근속연수의 정의 ○ (기산일) ① 또는 ② ①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 ②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 * 중간지급 신청하여 실제 퇴직소득을 받은 날 ○ (종료일) 현실적 퇴직일 ⇒ 단, 퇴직급여 산정시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은 기간 제외 (좌 동) <삭 제> ※ 이연방식이 세액이연으로 변경되어 필요 없음 ☐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 ○ (공제부금 총납부월수/12) * 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부터 적용
단, 퇴직공제금은 2013.2.15. 이후 발생 퇴직소득부터 적용

10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가. 개정취지

- 연금가입자에 대해 연금상품을 변경할 기회 제공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금외수령 판정 방법 ☐ (원칙) 연금수령* 외의 인출 ⇒ 연금외수령 * 요건 :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 (예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 인출액 중 과세대상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판정 * 연금소득 분리과세 최대 금액 Min(①이연퇴직소득, ②1,200만원 초과금액)
<신 설>	☐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가 적용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 및 신고 ☐ (세액정산) = [① - ②] ①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②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기원천징수세액 ☐ (신고절차) 수령자가 퇴직소득확정신고를 준용하여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관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

가. 개정취지

- 연금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 대리·위임 ① 주식·집합투자증권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 : 해당 법인과 금융회사간 ② 신탁계약의 경우 : 신탁업자와 신탁 소득 지급자간 <신 설>	<삭 제> ※ ①·② 법률로 이관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관계 명확화 ① 공적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② 연금계좌취급자(DB 제외) ☐ 퇴직소득세액정산 규정 준용 ○ 사용자와 위임자가 각각 퇴직소득 지급 하는 경우 정산* * 같은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의 경우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사유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이 소득이연에서 세액이연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사업자에게 정확한 과세자료가 전달되도록 지원
 - *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계산이 잘못되더라도 연금사업자에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교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지급명세서 기재사항 *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확인이 어려울 때 ☐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등 <추 가>	☐ 가산세 부과대상 지급명세서 기재사항 추가 ☐ (좌 동) ☐ 이연퇴직소득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부터

13 근로·퇴직소득 비과세 규정 정비

(소득세법 제12조)

가. 개정취지

- 연금 성격의 사용자부담분은 납입(적립) 당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제외
 - 연금의 사용자부담분은 추후 인출시 과세(퇴직·연금)되므로, 비과세된 소득을 다시 과세하는 불합리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퇴직소득이 비과세되는 사용자 부담금의 유형 ○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비과세 대상 정비 ○ (좌 동) ○ <삭 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납입·적립하는 분부터 적용

14 퇴직소득의 소득구분 명확화

(소득세법 제22조)

가. 개정취지

- 급여지급 규정 유무에 따른 과세불형평(근로소득·퇴직소득) 문제 개선

* 다만,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퇴직시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범위 ○ 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 * 예) 퇴직공로금·위로금: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시 퇴직소득이나, 이외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 * 일반근로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퇴직소득 결정 ☐ 퇴직소득 한도 ○ 적용대상 : 임원 ○ 적용한도 $\text{퇴직전 3년 연평균 급여} \times \frac{1}{10} \times \text{연수} \times 3$ *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 간주	☐ 퇴직소득의 범위 개선 ○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 (좌 동)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5 근로·퇴직소득 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2항, 제42조의2)

가. 개정취지

- 사용자의 퇴직금 등 적립은 적립단계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명확화
-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공로금·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삭제
-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하므로 이를 명확화
-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고, 종업원에게 환급될 때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삭제
- 퇴직공제금은 사용자 적립단계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령 단계에서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사용자가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에 납입하는 보험료 등 - 다만, 다음은 경우 제외 · 퇴직보험·퇴직신탁의 보험료 등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공제부금 ○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위로금·공로금	(좌 동) <삭 제> <삭 제> <삭 제>

종 전	개 정
○ 퇴직보험·신탁 등 해지시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신 설> <신 설> □ 퇴직소득의 범위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지급하는 과학기술장려금 <신 설>	<삭 제>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적립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좌 동)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소득 분부터 적용
(단, 퇴직공제금은 2013.2.15.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16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범위 조정

(소득세법 제155조의2)

가. 개정취지

- 특정금전신탁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범위는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한정되므로 관련 조문정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금전신탁의 과세시기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을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로 처리	(좌 동)
☐ 특정금전신탁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 등	☐ 소득의 범위 조정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7 금전 외의 대가로 지급시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1조)

가. 개정취지

- 총수입금액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되므로 근로소득만 별도 규정할 필요 없으므로 조문정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법」상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총수입금액을 금전 외로 수입하는 경우 평가방법 - 판매가액, 시가, 주식액면가액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른 평가방법	(좌 동)
☐ 근로소득을 금전 외로 수입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규정 준용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문의사항 : ☎ (02) 397-7552~7554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118
2. 채권 과세제도 정비	119
3. 과세제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및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등 신설	121
4. 저축성보험 계약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	122
5. 기타 제도 개선	123

소득세법 (금융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인하
- 채권 장기투자 유도·지원을 위하여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 과세시 보유기간 요건 시설 등 채권 과세제도 정비
- 과세제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및 종신탄금연금보험 요건 신설
- 저축성보험 계약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
- 역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하고 파생결합사채 과세제도 정비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1호) : 2013.1.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6호) : 2013.2.15. 공포

0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 4천만원	☐ 기준금액 인하 ○ 4천만원 → 2천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2 채권 과세제도 정비

(1)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개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 개정취지

- 채권의 장기투자 유도·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0년 이상 장기채권 분리과세 ☐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 가능 * 10년 경과전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 상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	☐ 보유기간 요건 신설 ☐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2)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은 최초 차입금의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하락을 보상한 것으로 금전사용의 대가임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 ○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	○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03

과세제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 월적립식 저축성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방지, 서민·중산층의 장기저축 유도 및 다른 금융상품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 ☐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 받는 경우	☐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계약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종신행 연금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의 합계액 - 단,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는 과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i) 계약기간 10년 이상 ii) 적립기간 5년 이상 iii) 기본보험료 균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행 연금보험 i) 사망시 계약·연금재원 소멸 ii) 55세 이후 연금수령 iii)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04 저축성보험 계약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금융상품간 과세형평 제고, 명의변경 등을 통한 과세회피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저축성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기산일 ① (명의변경) 계약자 명의변경시 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각 계약자별로 계약기간 기산* * 단, 사망으로 인한 계약의 이전은 예외 인정 ②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계약변경시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기산 ③ (보험료 증액)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기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단, 보험료증액의 경우는 2013.2.15.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05 기타 제도 개선

(1) 역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국외 설정 신탁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역외 집합투자기구가 배당소득 과세대상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 과세대상 집합투자기구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 -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 ☐ 국외 설정 신탁	☐ 역외 집합투자기구 범위 명확화 (좌 동) ☐ 신탁 → 집합투자기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파생결합사채 과세제도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가. 개정취지

- 「상법」상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에 대한 과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의 이익은 배당 소득 과세대상에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illegible]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재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경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종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양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창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심정식

☎ 문의사항 : ☎ (02) 397-7573~6

1.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	128
2.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129
3. 법인분할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	130
4. 주식대차거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	131
5.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	132
6.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중과유예 일몰 연장	133
7. 투기지역내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 일몰 연장	134
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35
9.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기준 완화	136
10. 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원화	137
1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139
12.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제한	140
13. 비과세·감면 등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신고납부 기한 신설 ..	141
14.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의 지분변경시 과세방법 변경	142
15.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143
16.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	144
17.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자경요건 완화	146
18.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147
19. 중과 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148
20.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149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확대 및 판정기준 보완
-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
-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중과유예 일몰 연장
- 투기지역내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 일몰 연장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기준 완화
- 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원화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제한
- 비과세·감면 등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신고납부기한 신설
- 일반주택 양도 후 공동상속주택의 지분변경시 과세방법 변경
-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 임대주택사업자가 양도하는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자경요건 완화
- 주택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 중과 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1호) : 2013.1.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87호) : 2012.6.29.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6호) : 2013.2.15. 공포

01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범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 - 3% → 2% - 100억원 → 50억원 ☐ 코스닥시장 - 5% → 4% - 50억원 → 40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1. 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2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대주주”에 해당되는 기타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세 대상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주주 판정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주식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 (주주1인)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 (기타주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주주1인”의 아래 특수관계인 －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주주1인”의 특수관계인 －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 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경영지배관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3 법인분할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법인 분할시 대주주 판정 기준일 규정 보완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판정기준 * 지분율 3%(코스닥 5%) 이상 또는 시가 총액 100억원(코스닥 50억원) 이상 ○ (원칙)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법인의 신주를 합병사업연도에 양도 하는 경우 －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신 설>	○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 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분할비율에 의해 안분하지 않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법인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04 주식대차거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회피 방지 및 대차(貸借)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주식 판정시 대차거래 주식 산정방법 * 지분율 3%(코스닥 5%) 이상 또는 시가 총액 100억원(코스닥 50억원) 이상 ○ 대차주식은 차입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대여자 주식에서 제외 * 대법원2007두11092, '10.4.29.	○ 대차주식은 대여자 주식으로 보아 대주주 여부 판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대차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013.2.14. 이전에 대여되어 2013.2.14. 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2013.2.15.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

05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환산가액을 적용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 ○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매매사례가액(주권상장법인 제외),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용 * 환산가액 = 양도가액 × $\frac{\text{취득 당시의 기준시가}}{\text{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6 다주택자 · 비사업용 토지 중과유예 일몰 연장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중과 ☐ 1세대 2주택 : 50% ☐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비사업용 토지 : 60%	
☐ 2012.12.31. 까지 중과유예	☐ 2013.12.31. 까지 중과유예 1년 연장

07 투기지역내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 일몰 연장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적용유예를 1년 연장하되,
 - － 국지적 개발수요에 따른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지역내 추가과세 제도 1년 연장
 - *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10%p 추가과세 ☐ 대상 － 1세대 3주택 이상 － 조합원 입주권 포함한 1세대 3주택 － 비사업용토지 ☐ 적용기한 : 2012.12.31.	☐ (좌 동) ☐ 2013.12.31. 까지 적용기한 1년 연장

0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로 완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9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기존 주택보유자의 신규주택 매수여건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내 → 3년 이내로 완화 *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

(소득세법 제90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일부 「조세특례제한법」 조문(§43, §98의3, §98의5, §98의6, §99, §99의3)에서 소득공제방식으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 「소득세법」 (§90, §92)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한 모든 감면소득의 계산시 안분방식*으로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감면세액 계산시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함
- * 먼저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그 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계산
 - ⇒ 안분방식은 산출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금액 전부에 대해 누진세율을 일단 적용하므로 소득 공제방식에 비해 산출세액이 크게 계산됨
- 「조세특례제한법」 (§99)을 문리해석하여 소득공제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

* 대법원 판결(2010두3725, '12.6.28.)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과표 및 세액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92) –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을 한 금액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결정세액(§93) –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감면세액(§90) – 「소득세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감면소득금액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감면세액을 계산 $\frac{\text{감면대상 소득금액} - \text{양도소득 기본공제}}{\text{양도소득 과세표준}}$ * 같은 뜻 : 재재산-617, 2009.3.27.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소득금액도 위 감면세액 계산방식(§90)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감면 방식**은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계산 방식(§90)에 우선하여 적용됨(§90②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43, §98의3, §98의5, §98의6, §98의7, §99, §99의3 ** 소득공제 감면방식 : 감면소득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 양도시만 적용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시점에서 주택을 보유한 자가 추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멸실 전 주택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대상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신 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대상 추가 ○ (좌동) ○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부분(승계취득분 제외)
☐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신 설>	○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56조의2 제6항·제7항)

가. 개정취지

- 상속 받은 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 매번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불합리를 개선
 - 수도권 밖의 읍·면에 소재하는 상속주택(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비과세 계속 적용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현 규정상으로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여도 매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상속받은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비과세·감면 등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신고 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제21항, 제156조의2 제13항, 제167조의3 제5

가. 개정취지

- 비과세·감면, 중과제외 등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시 신고납부기한 및 과세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 추정사유 발생일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2개월 내)과 동일하게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등을 적용받고 그 요건을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과세 표준 신고의무 발생 * 단, 신고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 <신 설>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 발생 분부터 적용

14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의 지분변경시 과세방법 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가. 개정취지

- 세무서장이 협의분할등기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당초 상속지분과 다르게 협의분할 등기한 것이므로
 -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납세자가 누리는 혜택과 의무간 형평을 맞추는 측면에서 바람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주택 + 상속주택(공동상속)에 대한 과세제도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간주 ○ 추후 협의분할 등기시 최대지분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결정	- 지분 변경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자가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신고 * 협의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 발생 분부터 적용

15 혼인 또는 동거불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제9항)

가. 개정취지

- 혼인 또는 동거불양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이 혼인·동거불양으로 인해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혼인·동거불양을 오히려 저해하는 불합리 초래
 - 다만, 혼인합가주택, 상속주택의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어 주택으로 완공된 후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갖추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혼인·동거불양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 혼인 또는 동거불양 후 5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적용대상 : 혼인·동거불양 당시 보유한 하던 주택	○ 적용대상 확대 : 혼인·동거불양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포함 - 주택 완공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고, 혼인·동거불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2항·제3항·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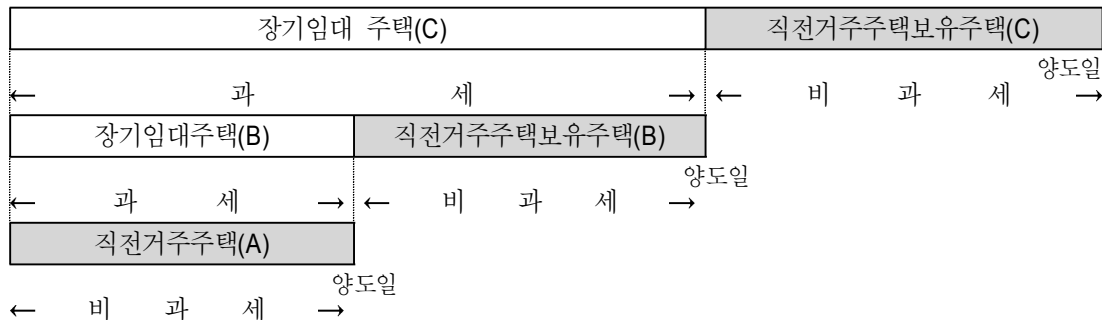
가. 개정취지

- 직전거주주택 보유당시에는 임대주택이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연 8%, 최대 80%)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확화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의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B) 양도시 : 직전거주주택(A) 양도일 이후 시점부터 B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전·후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소득세법」 §95②)

보유기간	<표 1> 공제율	<표 2>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	24%
4년이상 5년미만	12%	32%
5년이상 6년미만	15%	40%
6년이상 7년미만	18%	48%
7년이상 8년미만	21%	56%
8년이상 9년미만	24%	64%
9년이상 10년미만	27%	72%
10년이상	30%	80%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표2) 배제 *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거주기간분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 부·모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부·모의 재촌·자경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

* 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 '12.10.26.

-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충분히 사업용으로 활용하였고, 상속·증여받은 경우는 직접 매입한 것과 달리 부득이한 취득임을 고려하여 배우자로 상속·증여받는 경우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상속·증여받은 토지 <신 설>	○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기간 산정시 그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도 포함 ○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된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 ☐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 양도기한 연장 · 2년 → 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중과 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가. 개정취지

- 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면적제한을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면적기준 폐지 * 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구 분	호수	기간	면 적	가 액 (기준시가)	
수도권	1호	5년	149㎡ 이하	6억원 이하	
지 방				3억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요건 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 투기 목적의 주택보유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포함 ○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1)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경우, 2) 종전주택이 수용된 경우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문의사항 : ☎ (02) 397-7562~5

1.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	155
2.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156
3.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	157
4.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158
5.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159
6.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개선	160
7.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161
8.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 변경	163
9.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164
10.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165
11.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	166
12.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제사업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추가	167
13.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168
14.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	169
15.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신설	170
16.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규정 개선	172
17.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 일몰 종료	173
18.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 항구화	174
19. 중과 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175
20.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176
21.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177
22.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178

23.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 변경	179
24.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 기간 변경	180
25.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명확화	181
26.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일원화	183
27.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대상 확대	184
28.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보완	185
29.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추가	186
30.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명확화	187
31.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188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구간을 종전 5개에서 9개로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
- 특수관계인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 한도 계산시 적용률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춤
-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전자신고시에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 완화
-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승인 및 승인 취소권자를 국세청장에서 완전모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7호) : 2013.1.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7호) : 2013.2.15. 공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25호) : 2013.2.23. 공포

01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농협, 수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령상 비영리법인으로 정한 조합법인 ○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 산림조합 및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 대한염업조합 <추 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 연합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2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	
○ 국세청장의 승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3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가. 개정취지

-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 5개 - 5년, 8년, 10년, 12년, 20년	☐ 기준내용연수 구간 추가 ☐ 5개 → 9개 - 4년, 6년, 14년, 16년 추가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조정(11개 업종)

업 종	현행(연)	개정안(연)
교육서비스업	5	4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	
통신업	8	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	
부동산업	5	8
종합건설업	5	
수리업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	16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유예기간 1년)

04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라목)

가. 개정취지

- 사립학교인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대상 ○ 국가·지자체 등 ○ 국립대학병원(시설비·교육비·연구비) ○ 사립학교 등(장학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 사립학교(초·중·고·전문대학·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 산학협력단 등 <추가>	○ (좌 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전환된 시설로서 - 지방소재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전환된 반면, 수도권소재 학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으로 전환·인가되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5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가. 개정취지

- 지역사회 재생,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대상법인으로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 단체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등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 (신 설)	☐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 지정요건 ①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② 나머지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지정요건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06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국제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기구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 목적요건 - 별도의 요건 없음 2) 운영요건 -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동일 <추 가> 4) 지정방법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6년 마다 재지정)	1) 목적요건 신설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삭 제> 3) 가입요건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 4) 지정방법 -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7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 별표6의4)

가. 개정취지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신 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신 설> ○ <신 설>	☐ 범위 추가 ○ (좌 동)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좌 동)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남북자피해가족연합회

종 전	개 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신 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신 설> <신 설>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36) <신 설>	○ (좌 동)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좌 동)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국제기구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설 ○ 유엔난민기구(UNHCR) ○ 세계식량계획(WFP) ○ 국제이주기구(IOM)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8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 변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건수의 증가에 따른 검토기간, 관보게재 의뢰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간을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 ○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 추천기한 변경 ○ 20일 전까지 → 1개월 전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4.1. 이후 추천하는 분부터 적용

09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접대비 한도의 적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① 접대비한도액(① + ②) ① 기본금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② 수입금액 × 설정률*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설정률* × (20%) * 설정률 <table> <tr> <th>수입금액</th><th>설 정 률</th></tr> <tr> <td>100억원 이하</td><td>0.2%</td></tr> <tr> <td>100~500억원</td><td>0.1%</td></tr> <tr> <td>500억원 초과</td><td>0.03%</td></tr> </table>	수입금액	설 정 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① (좌 동) ② (좌 동) － 축소 : 20% → 10%
수입금액	설 정 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② 수입금액의 계산 ○ 일반기업 : 매출액 ○ 금융공기업* : 매출액 + 수수료의 6~9배 *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자산관리공사(수수료 등의 9배) * 신보, 기보, 무역보험공사 등 19개 보증기관(수수료 등의 6배)	○ (좌 동) ○ 수수료배율 일원화 : 현행 6~9배 → 6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복리후생비의 범위 ☐ 직장체육비 ☐ 직장연예비 ☐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기타 경조사비 등 <추 가>	☐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 (좌 동) ☐ 직원회식비 포함 ☐ (좌 동) ☐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추가>	○ (좌 동)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연장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 -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 연장기간은 최초 착공연장 승인일로 부터 5년으로 제한 ※ (경과규정) 규칙시행전에 착공연장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 연장기간은 규칙 시행일부터 5년으로 제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착공연장을 승인(재승인 포함)받는 분부터 적용
 - 2013.2.23. 전에 착공연장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2013.2.23.부터 5년으로 제한

12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제사업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법령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다른 보험·공제와의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대상) - 보험회사의 보험사업 - 수협 공제사업 -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추 가)	☐ 대상추가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법인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 일반법인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전문금융, 종합금융 -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 신보, 기보, 무역보험 등 보증·공제 관련 금융 회사 -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 설정률 인하 - (좌 동) - 2% → 1% - 2% →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적격합병·적격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해주고 있는 합병(§44), 분할(§46), 물적분할(§47①, ③) 제도와 의 형평을 기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양도 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후 ○ 분할법인이 주식 처분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자산 처분시 분할법인에게 과세(「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 (과세이연금액 × 처분비율) 만큼 분할법인에 과세 < 단서 신설 >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법인에게 즉시과세하지 않고 주식 또는 자산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분할신설법인이 i) 적격합병하거나, ii) 적격분할함에 따라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분할법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15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제8항)

가. 개정취지

○ 기업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득이한 사유 (i)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 (ii)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인적분할(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 ○ 다만,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만 적용 ☐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방법 ○ 적격합병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i)) : 소멸되는 각각의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적격합병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함 ○ 적격인적분할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ii)) :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승계자산 중 처분자산 양도차익 비율'(「법인세법 시행령」 §84③2호)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적격분할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함

종 전	개 정
<신 설>	□ 새로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과세 ○ 다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84③*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익금 산입 (i) 분할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인적분할의 대가로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 (ii)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재신설법인*이 해당 승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존속합병법인, 신설합병법인 모두 포함) 또는 적격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 ※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과 자산의 처분비율*대로 익금산입(「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 비율 = $\left[\text{주식처분비율(A)} + \text{자산의 양도차익비율(B)} - A \times B \right]$ * 주식처분 비율(A) : 당기에 처분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 전기말 주식등의 장부가액 * 자산의 양도차익 비율(B) : 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종전 물적분할시 양도차익 / 전기말 자산의 종전 물적분할시 양도차익 □ 사후관리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 (i) 재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최초 물적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ii) 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분할신설법인간 적격합병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6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규정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상의 상장주식의 평가원칙과 통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 방법 ○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동안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①)	-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7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 일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가 재시행됨에 따라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일몰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10%p 추가과세 ☐ 대상 - 주택 - 비사업용 토지 ☐ 적용 기한 : 2012.12.31.	☐ 일몰 종료

18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 항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8항)

가. 개정취지

- 재정건전성 제고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 주택 : 30%(미등기시 40%) ○ 비사업용 토지 : 30%(미등기시 40%)	
☐ 2012.12.31.까지 추가과세 유예	☐ 일몰 종료

19 중과 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가. 개정취지

- 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면적제한을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면적기준 폐지 * 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구 분	호수	기간	면 적	가 액 (기준시가)	
수도권	1호	5년	149㎡ 이하	6억원 이하	
지 방				3억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대표자의 서명날인 ○ (수동신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필요 ○ (전자신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불가 * 전자신고 비율 평균 97%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전자신고시에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완화

※ 「소득세법」상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중복적용 배제되고 있음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제4항)

나. 개정내용

중 전	개 정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중복적용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사실과 다른 수취금액 × 2% ** 계산서 미발급·가공(위장)수수 : 공급가액 × 2% 계산서 부실기재 등 : 공급가액 × 1%	☐ 중복 적용 배제 ○ 중복시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2%)만 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2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 0.2% ☐ 사실과 다르게 기재 : 2% ※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	☐ 기준 명확화 ☐ (좌 동) ☐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 변경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 제76조의9 제1항, 제76조의10 제1항·제3항, 제76조의11 제3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세무행정의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 적용승인 및 취소권자 ☐ 국세청장	☐ 관할 지방국세청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적용을 승인·취소·포기하거나 연결자법인의 변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4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 기간 변경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승인 기간 ☐ (신청)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승인)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 적용 신청·승인 기간 연장 ☐ (신청)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 (승인)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연결납세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25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의4)

가. 개정취지

-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중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 준용 □ 준용시 세부 규정 ○ 출자비율 :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 합계 ○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 :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합계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이자 제외)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 - 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 제거	○ 세부 규정 명확화 -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연결집단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차감 * 차감 자산 :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연결법인 대상 채권, 연결법인의 주식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액 - 지급이자 \times \frac{\text{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text{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times \text{익금불산입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6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일원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설립신고시 제출서류 ○ 주주등의 명세서 ☐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등 사본 ○ 임대차계약서	☐ 법인설립신고시·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 주주등의 명세서 ○ 사업허가증 등 사본 ○ 임대차계약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27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대상 확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제5항)

가. 개정취지

-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하는 것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분경리 대상 ○ 비영리법인 ○ 신탁회사 ○ 적격합병한 합병법인 ○ 적격분할합병(인적분할만 해당)한 분할 신설법인	☐ 구분경리 대상 보완 ○ (좌 동) ○ (좌 동) ○ 적격합병 → 합병 ○ 적격분할합병 → 분할합병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8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보완

(법인세법 제120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내국법인에게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9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가. 개정취지

-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의 주식취득가액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 <추 가>	○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등예탁자에 지급하는 의제배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0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명확화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 규정(§127⑤)과 동일하게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 의무자 ☐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의 소득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자 <추 가>	☐ (좌 동) ☐ (좌 동)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소득을 국내에서 대리하여 지급하는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소득지급분부터 적용

31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기업어음 투명성 제고 및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 채권이자소득 ○ (원천징수 면제) - 기타 이자소득 - 배당소득 <추 가>	○ (원천징수 대상) - 채권이자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단기사채 제외) ○ (원천징수 면제) - (좌 동) - (좌 동) -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 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부터 적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남 옥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제조사관 안 동 숙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제조사관 유 원 재

◎ 문의사항 : ☎ (02) 397-7542~3

1. 외국법인 판정기준 명확화	192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상 구분 및 과세방법 명확화	194
3. 국내사업장-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독립기업원칙 적용 명확화	196
4.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197
5. 외국교육기관 운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199
6. 거주자·비거주자가 내국법인·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200
7.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연금소득 구분 및 과세방법 신설	202
8.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 확대	204
9.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206
10. 외국법인의 국내자산 수증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명확화	207
11. 외국법인의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명확화	208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하여 외국투자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및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으로 이중과세 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과세 불형평 해소
- 거주자·비거주자도 내국법인·외국법인과 동일하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과세대상소득 지급 후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과세관청의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1호) : 2013.1.1. 공포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7호) : 2013.1.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6호) : 2013.2.15.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7호) : 2013.2.15. 공포

01 외국법인 판정기준 명확화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외국단체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투자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단체에 대한 과세기준 ○ 외국법인 : 법인세 과세 * '법인'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이 없음 ○ 기타 외국단체 : 소득세 과세	☐ 외국단체의 과세기준 명확화 ○ '법인'의 기준 신설 -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단체 (i)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ii)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단체 (iii)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iv) 그밖에 해당 외국의 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의 단체 ○ 위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외국 단체로 분류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청장이 외국단체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하도록 근거마련
<신 설>	☐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에 국내에 사업장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법인판단기준 적용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내용이 판정결과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상 구분 및 과세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80조의2)

가. 개정취지

- 법인 아닌 단체의 과세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과세방법 ○ 단체의 구분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과세 ○ 과세방법(소득칙 제2조) — 이익의 분배방법·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 * 1비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구성원에 게 분배하여 과세	□ 단체의 구분 및 과세방법 명확화 ○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명확화 — 동 단체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에 따라 구분 (국내 소재) 거주자 (국외 소재) 비거주자 ○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상향 입법화하고 과세방법 명확화 — (좌 동) · 국내사업장이 있는 단체 :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동사업 과세방식 적용

종 전	개 정
- 이익의 분배방법 ·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국내사업장이 없는 단체 : 구성원별로 과세 - 이익의 분배방법 ·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국내사업장 - 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독립기업원칙 적용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가. 개정취지

- 국제기준의 내용에 따라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부거래에 따른 소득의 인식 및 정상가격 적용 여부 불명확 □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 ○ 자금대차거래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만 인정 ○ 본점 및 국외의 다른 지점의 공통경비 : 국내사업자에 배분	□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해 계산된 소득*이 과세 표준 계산시 포함됨을 명확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방법 준용 ○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 - 다음의 비용은 손금 등에 산입하지 아니함 · 자금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04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57조,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제10항, 법인세법 제57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제15항)

가. 개정취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으로 이중과세 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 $\frac{\text{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text{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times \text{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간접경비를 차감한 금액 * 서식으로 규정 □ 외국자회사가 외국 손회사등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중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50%) 공제를 적용받는 대상 * 외국 손회사(원천징수세액), 제3국 지점(지점세)	□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명확화 (좌 동) ○ 국외원천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간접 비용*을 차감한 금액 * 국내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등 - 비용의 차감에 따른 한도액 감소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불가 □ 공제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 - 외국자회사가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금액 <추 가>	- (좌 동) - 외국자회사가 손회사등 소재지국 원천소득에 대해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비과세·면제받는 경우의 해당 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5 외국교육기관 운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 수익사업의 범위 - 사업소득 · 다만,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2①) *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상 학교, 「평생교육법」 상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확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제외 · 다만, 국내 분교가 정관 등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의 국외 본교송금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 과세대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거주자·비거주자가 내국법인·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거주자·비거주자도 내국법인·외국법인과 동일하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①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③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④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부과대상 : 제출기한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 2% 가산세 부과 - 거주자·비거주자 ·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규정 · 위 ③, ④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미규정	○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 거주자·비거주자 · (좌 동) · 내국법인,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비거주자가 지급명세서 미제출시에도 가산세 부과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외국법인 · 위 ①~④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규정 * (참고) 재국조474('11.10.7.) :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불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제8호의2·제12호, 제121조 제2항, 제122조, 제12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9조 제9

종 전	개 정
□ 과세방법 ○ 퇴직소득, 부동산양도소득 : 거주자의 과세방법 준용 ○ 그 밖의 소득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종합과세 - 그 밖의 비거주자 : 분리과세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과세 방법 준용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신설 (제121조제2항, 제122조, 제126조) ○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거주자의 과세방법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제1항 제7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7호)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비과세·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비과세·면제신청서 미제출시 제외) (제1호) ○ 이자·배당·선박등임대·사용료·유가증권양도·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제2호) ○ 부동산임대소득 (제3호) ○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제4호) ○ 복권,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등 기타소득 (제5호)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한 국내원천소득 (제6호)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 소득 축소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제7호) ○ 기타 * 예금 등 잔액 30만원미만으로서 1년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	○ 적용제외 - 부동산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양도차손 등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09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소득세법 제164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거주자와 동일하게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일반적인 경우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일 ※ 근로소득·퇴직소득 포함 * 거주자의 근로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 휴·폐업의 경우 :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외국법인의 국내자산 수증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명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자산수증이익의 경우 증여자자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의 기타소득 과세방법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종합과세 신고 · 납부 - (과세표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분리과세 원천징수(20%) - (과세표준) 지급액	○ 외국법인의 국내자산 수증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시 세율적용 대상금액 명확화 - 국내자산 수증이익은 “취득당시 (증여일)의 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외국법인의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부동산주식의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 ○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 (개인) 주된 사업장 소재지등 (법인)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등 ○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가지지 않은 경우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 그 밖의 경우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납세지 보완 -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을 추가 * 유가증권 양도소득,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남 옥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안 동 숙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 원 재

◎ 문의사항 : ☎ (02) 397-7542~3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시 특수관계 판정기준 보완	212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시 배당간주 적용대상 확대	213
3.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보완	214
4.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보완	215
5.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216
6.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요구권 신설	217
7.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218
8. 해외금융계좌 보유계좌잔액 계산 기준 변경	219
9.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220
10.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반환금액의 귀속사업연도 명확화	2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시 내국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와 합하여 외국법인에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경우에도 동 제도가 적용되도록 개선
-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을 보완하여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계약상대국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과세
-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전소득금액이 발생하고 그 중 일부만을 반환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반환금액의 과세연도 적용순서에 따라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의 금액이 달라지므로 적용순서를 명확히 규정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6호) : 2013.1.1.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5호)
: 2013.2.15. 공포

0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시 특수관계 판정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가. 개정취지

- 내국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와 합하여 외국법인에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경우에도 동 제도가 적용되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는 내국인(거주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 ○ 특수관계 판정기준 -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 - 제3자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	○ 특수관계 판정기준 보완 - 내국인과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가 직·간접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 하여 50% 소유여부 판정 *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및 나목 ** 비거주자가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소유하는 경우에는 미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0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시 배당간주 적용대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인이 특수관계인과 분산 출자한 경우에도 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다만, 그 주식의 법적 소유권자는 특수관계인이므로 내국인의 배당간주액 산정시에는 합산하지 아니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 ○ 가족소유지분*을 포함하여 외국법인의 지분을 10%이상 직·간접 보유한 주주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 적용대상 내국인 범위 확대 ○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소유지분*을 포함하여 10% 소유여부 판정 *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및 나목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03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식 등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수취 비율 요건 판정시 주식양도소득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배제 요건 ① 자회사*의 주식 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영 제36조의3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회사(① 해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40% 이상 소유, ②조세 피난처과세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② 같은 지역 또는 국가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소득이 지주회사 전체 소득 금액의 90% 이상일 것 － 다만,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지주회사 전체 소득 금액에서 제외	－ 자회사*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도 지주회사 전체 소득 금액에서 제외 * 영 제36조의3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회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04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6조의2 제3~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가. 개정취지

-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 국세청에서는 자체 개발한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 (재무비율에 따른 신용등급 산정 후 이에 따른 부도율, 회수율 등을 기초로 산출한 가산금리 차이 등을 활용)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별도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여 명확화 ○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비용접근법 : 보증인이 지급보증거래로 부담하는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 ② 편익접근법 : 피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얻는 기대 편익을 기초로 산출 * 재무정보 외에 비재무적 정보를 추가하고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한 부도율 · 회수율 등 산정 허용 ③ 비용 · 편익접근법 :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 ○ 납세자가 적용한 다음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간주 － 지급보증 계약 체결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에 의한 수수료 * 산정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 * 편익접근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지급보증하는 분부터 적용

05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계약상대국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법인세법」 － 선박·항공기 임대소득과 함께 임대소득으로 구분 － 세율 : 2% ○ 대다수 조세조약(63개국) － 사용료소득으로 구분 * 소득구분은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8) － 세율 : 제한세율 0~15% * 「소득세법」·「법인세법」 : 20% ⇒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 장비 사용대가에 대한 세율 적용 방법 불명확(2% or 제한세율)* * 조세조약상 장비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세법상 세율 적용(국세청 서면2탐-2003, 05.12.7.)	□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 명확화 ○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0~15%)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6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요구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제5항·제6항)

가. 개정취지

- 현행 정보교환협정 및 OECD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규율된 자동정보교환 이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 표준양식에 명의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	□ 자동금융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 요구 ○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
<신 설>	□ 자동금융정보교환에 대한 특례 ○ 자동금융정보의 경우 명의인의 인적사항 미기재
<신 설>	□ 요구내용 및 요구대상 금융회사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동안 최초 1회 요구로 이후 요구를 같음
<신 설>	□ 금융회사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 명세서를 개별 점포별로 작성하여 제출 ○ 요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최초의 요구서로 같음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까지)에 제출* * 정보통신망 또는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07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제50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다음 계좌 - 은행업무 관련 개설 계좌 - 증권 거래 관련 개설 계좌 <신 설> ☐ 타인명의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 ☐ 다음의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여 신고의무를 면제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한 자 -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외 증권에 투자한 자	☐ 신고대상 확대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로 확대 (좌 동) - 채권, 파생상품, 보험 등 추가 ☐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 (좌 동) -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는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부터 적용

08 해외금융계좌 보유계좌잔액 계산 기준 변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내역*을 신고 * 계좌보유자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 최고잔액 등 ○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 해당 연도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 합산	○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변경 :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 합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부터 적용

09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가. 개정취지

- 제재 강화를 통한 제도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형사처벌 도입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 등의 10%이하 벌금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형사처벌시 과태료는 미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부터 적용

10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반환금액의 귀속사업연도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전소득금액이 발생하고 그 중 일부만을 반환받은 경우,
 - 익금에 산입하는 반환금액의 과세연도 적용순서에 따라 소득처분 및 반환 이자의 금액이 달라지므로 적용순서를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익금에 산입된 금액 반환시 반환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이전 소득금액 익금산입액 중 일부만을 반환 받은 경우 - 반환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적용순서에 관한 규정 없음	☐ 일부 반환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명확화 ☐ 먼저 발생한 이전소득금액을 우선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는 경우부터 적용

☎ 문의사항 : ☎ (02) 397-7573~6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 선정 보완	227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228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229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보완	230
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 특례 폐지	231
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232
7.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233
8.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기획재정부장관 확인 의무화	234
9.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절차 등 신설	235
10.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 신설	236
11.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신설	237
12.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개선	238
13. 공익법인 공시대상서류 확대	239
14.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240
15.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241
16.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242
17.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243
18.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보완 ·	244

19.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245
20. 족보 등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액기준 규정	246
21.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 확대	247
22. 연부연납시 물납 신청 금지	248
23.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축소	249
24. 연부연납 신청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개선	250
25. 상속분쟁으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명확화	2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합리화
- 성신평의법인 요건을 강화하고, 성신평의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의무화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 신설
-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확대
- 증여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개선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등 신설
-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9호) : 2013.1.1.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358호) : 2013.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7호) : 2013.2.23.

01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의 범위 ○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 합이 가장 높은 개인 ○ 지배주주 제외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아닌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의 범위 ○ (좌 동) ○ 지배주주에서 제외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아닌 경우 -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아닌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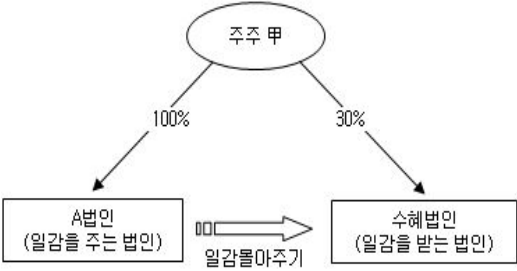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가. 개정취지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주주 甲에게 과세 ⇒ 자기증여 문제 발생 가능 	□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를 고려하여 과세 ○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03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에서 세원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혜법인이 국내외법인인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	☐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가. 개정취지

- 세후영업이익 계산의 편의를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후영업이익 계산 : ① - ② ①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법상 영업손익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차감 ② 법인세액 × (세법상 영업손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세후영업이익 계산 : ① - ② ① 영업손익에 다음의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법상 영업손익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3)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33) - 퇴직보험료 등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44의2)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법인세법」 §34)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세법」 §40) -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41) ②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05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가. 개정취지

- 동일한 이익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 제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①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② 지배주주 등과 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③ ①과 ②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개재된 모든 법인 ④ 다만, 지주회사는 지배주주 등이 50% 미만 출자한 경우 제외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0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가. 개정취지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의제이익 계산 ☐ 정상거래비율(30%) 공제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text{정상거래비율}) \times (\text{수혜법인주식보유비율} - 3\%)$	☐ 증여의제이익 과세 강화 ☐ 정상거래비율(30%)의 1/2(15%)만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행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07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성실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 ○ 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이하 ○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공익사업에 사용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추가 ○ (좌 동) ○ 장부작성·보관의무(10년간) ○ 계열기업 홍보금지 ○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 금지 * 신설되는 요건은 종전에도 공익법인의 의무(가산세 부과)이나 개정이후 의무위반시 성실공익법인 지정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 영 시행 전 성실공익법인이었던 경우에는 2013.1.1.이후 최초로 개시된 과세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08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기획재정부장관 확인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시 즉시 성실공익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증여세 등을 추정할 수 있도록 요건충족여부 확인을 의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를 법인이 신고 (확인절차 없음)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에서 성실공익법인여부 체크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의무화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 받을 것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 확인 되면 그 결과를 통보 ○ 매 5년마다 재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이 영 시행 당시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때까지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

09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절차 등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가. 개정취지

-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사후관리하기 위한 확인절차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무관청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요청 절차 ○ 요건충족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요청 * 제출서류 ① 해당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② 영 제43조제7항 감사보고서 ③ 전용계좌개설신고서 ④ 결산서류공시내역 ⑤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이행내역 ⑥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⑦ 이사 등 선임명세서 ⑧ 특수 관계인 수익명세서 ⑩ 특정 기업광고 등 명세서 ☐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 절차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반기부터 60일이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고 이를 해당 공익법인 및 주무관청에 통보 ☐ 재확인 요청 절차 ○ 성실공익법인으로 재확인 받고자 하는 성실공익법인은 5년간의 이행내역을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시 주무관청이 없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5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등 중 법인이 아닌 단체와 주무관청이 불분명한 경우의 출연재산 사후관리 주무관청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 예외 ○ 주식 5% 초과보유 가능 ○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 기한 연장 ○ 수혜자를 특정하여 혜택 제공 가능	(좌 동) ○ 다만,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허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정상적인 대가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기내부거래 증여세 과세 ☐ 무상사용 : 출연재산가액 전액 ☐ 저가사용 : 정상적인 대가와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 ☐ 정상적인 대가의 산정 방법 없음	(좌 동) ☐ 정상적인 대가 산정방법 규정 : 영 §31의9⑧ 준용 - 부동산임대용역 : 부동산가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2%) - 부동산임대용역 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2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세무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	☐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 직전과세기간 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외부감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

13 공익법인 공시대상서류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3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현황 ☐ 주식 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 등의 발행 법인과의 관계 ☐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 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신 설>	(좌 동) ☐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수행 현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중견 장수기업 육성 등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공제 제외기업	☐ 가업상속공제 제외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2,000억원 초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15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가. 개정취지

-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해 과세강화
* 대법원 판례 적용(대법 96누3272, '97.2.11.선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 추정 과세 * 차명금융재산의 경우 재산 취득시키는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적용 <신 설>	○ 차명계좌 증여추정 -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가. 개정취지

-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불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 주택가액의 40%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5억원 한도)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일 것 <신 설> * '10년 중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 공제 제외 <신 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규정 없음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① (좌 동)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 것 － 10년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 에도 공제 허용 － 주택부수토지 범위 · 도시지역 : 주택면적의 5배 · 기타지역 : 주택면적의 10배 ③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무주택자가 상속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17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4조의2)

가. 개정취지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 재산의 무상이전 :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 :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재산의 유상이전 : 시가 - 대가 ☐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 재산의 평가차액* *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시점 재산가액 - (취득가액 + 통상적 가치 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신 설>	☐ 과세요건 일반원칙 ☐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 이익이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8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원칙에 따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이익의 증여시점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재산의 증여시기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등록일 ○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분양권 이전 :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 그외의 경우 :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 (증여예시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3~§41의5 (증여추정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45 (증여의제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2~§45의3 <신 설>	(좌 동)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 가치증가사유 발생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9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가. 개정취지

- 해외 재산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과세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재산 ○ 비거주자 - 국내소재 재산 <신 설>	☐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확대 ○ (좌 동) ○ 비거주자 - 국내소재 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①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 ② 국내소재 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0 족보 등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액기준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족보와 제구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상속재산 ①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②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③ 족보와 제구 ④ ①과 ②의 합계액이 2억원 초과시 2억원 한도 <신 설>	(좌 동) ⑤ ③은 1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21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농업법인 등을 장려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 「농지법」에 따른 농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 ☐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조립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 「어선법」에 따른 어선 ☐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신 설>	(좌 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영농법인 주식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22 연부연납시 물납 신청 금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가. 개정취지

- 연부연납과 물납제도를 병행하려던 납세자의 기대를 일정 수준 보호하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첫 회분의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용
- * 일시적으로 거액의 조세부담이 발생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물납제도의 취지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부연납시 물납 신청·허가 ☐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	☐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 물납 허용 -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3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축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가. 개정취지

- 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용이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납재산의 범위 ○ 국내소재 부동산 ○ 국채, 공채, 증권 등 유가증권 - 상장주식 제외 * 허용하는 경우 ① 다른 상속·증여재산 없거나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경우 - 비상장주식 제외 * 허용하는 경우 ①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②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	○ (좌 동) - 상장주식 물납 가능한 경우 축소 : ① 삭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4 연부연납 신청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1호 서식)

가. 개정취지

- 상속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므로 일부 상속인에게만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협의를 받아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부 신청의 예외 사유 등을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부연납 신청 ○ 상속인 전부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이 자기지분에 한해 연부연납 신청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이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

25 상속분쟁으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 상속회복청구소송 확정판결 <신 설>	○ (좌 동)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결정 또는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문의사항 : ☎ (02) 397-7573~6

1.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256
2.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257
3.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요구 근거 신설	258
4.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	259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요구 근거 신설
-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92호) : 2013.2.22. 공포

01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면적 제한을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요건					○ 면적기준 폐지 * 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구 분	호수	기간	면 적	가 액 (기준시가)	
수도권	1호	5년	149㎡ 이하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2. 이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때부터 적용

02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가능 재산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물납 가능 ○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 확대 - 국내 소재 부동산*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2. 이후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

03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요구 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개인정보보호법」(’11.9.30.) 시행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불가능하여 법령상 근거를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료요구 권한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 요구 가능 (종부법 §21⑥)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자료로서 법원행정처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유 - 관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할 의무	☐ 요구가능 자료 추가 -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포함하는 자료로서 행안부장관이 「주민등록법」에 의해 보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2. 이후 최초로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04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세 부과자료 등을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권한 부여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9) ○ 국토해양부장관은 납세의무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필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2. 이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

☎ 문의사항 : ☎ (02) 397-7546~50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265
2. 저유소를 제조업의 사업장 범위에서 제외	266
3. 폐업신고서 송부 방법 추가	267
4. 한국석유공사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에 소비대차로 공급시 재화공급 범위에서 제외	268
5.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269
6. 수용시 부가가치세 절차 편의 제고	270
7. 용역대가를 건물 등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명확화	271
8.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재화 반출시 수출 규정 적용 합리화	272
9.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273
10.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	274
11.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275
12. 은행법령 개정에 따른 면세대상 은행업 명확화	276
13.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기관에 산학협력단 추가	277
14. 채권추심업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종료	278
15. 국립대학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명확화 ...	279
16.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재수입재화의 범위 개선	280
17.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보완	281
18. 세금계산서의 선발급 요건 간소화	282
19.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	283
20.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284
2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기준 명확화	285

22. 중소기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286
23. 예정고지세액 산정 기준금액의 합리적 개선	287
24.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	288
2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289
26.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 시기 조정	290
27.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291
2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292
29.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개선	293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징수하도록 함
-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공급하는 자가 매출 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세금 계산서의 가공발급 또는 가공수취와 동일하게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004.12.31.까지 2년간 연장하되, 우대공제액의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함
- 사회적기업이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
- 유방암 수술 후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을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1608호) : 2013.1.1.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9호) : 2013.2.15. 공포

0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6조의4)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 → 1회로 축소
 - *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7월)를 신설(연 2회 납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 간이과세자 - 1.1.~12.31.(1년)
<신 설>	☐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신설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 1/2를 7.25.까지 납부 ○ 예정고지 제외 -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 2013년 예정고지세액 산정방법 : 2012년도의 제1기 및 제2기 공급대가를 합산한 값에 법 제26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

02 저유소를 제조업의 사업장 범위에서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저유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조업의 사업장 장소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다만, 제품 포장 및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 단서 추가 － 석유제품의 단순 보관을 위한 저유소는 사업장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3 폐업신고서 송부 방법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행정효율성 및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폐업신고서를 세무서 이외에 주무관청에도 하여야 하는 경우 ○ 세무서 또는 주무관청 중 한 곳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제출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에 신고서를 송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방법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송부하는 분부터 적용

한국석유공사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에 소비대차로 공급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행정효율성 및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은 재화 공급에서 제외 <신 설>	○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내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차익 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는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5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육 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 (단서 신설)	○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무상임대용역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과세 대상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6 수용시 부가가치세 절차 편의 제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소유자의 직접 철거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 비과세 범위 확대
○ 소유자가 건물을 직접 철거하는 경우 외에는 과세	○ 수용 후 철거될 재화의 경우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7 용역대가를 건물 등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6호, 제48조 제15항)

가. 개정취지

- BOT 방식의 사업수행시 설치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공급시기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BOT 방식의 사업수행시 당초 시설 소유자의 과세표준 ○ 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다가 계약 만료시점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 설치시점의 가액을 계약기간동안 월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에 포함 ○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8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재화 반출시 수출 규정 적용 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가. 개정취지

- 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가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반출하는 원재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 ○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외국인도수출 －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 양수한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 반출한 재화(“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 요건 삭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9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해외구호사업에 위한 재화 공급시 영세율을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가 재화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원조·구호단체(해당 단체의 사업을 위해 해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에 한정)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 가>	☐ 대한적십자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가. 개정취지

- 유방암 수술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 코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좌 동)
○ 유방확대·축소술	(좌 동)
	○ (단서신설)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가. 개정취지

-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세부담 경감
 -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사회적기업육성법」 §7)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의료용역 <추 가>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도우미,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등의 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추 가>	☐ 사회적기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은행법령 개정에 따른 면세대상 은행업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은행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면세대상 은행업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은행업의 범위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 「은행법」에 따른 부수업무 중 일부 -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상호 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기관에 산학협력단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가. 개정취지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공공성 감안

*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이미 부가가치세 면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기관 ☐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 등 ☐ (추 가)	☐ (좌 동) ☐ 산학협력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채권추심업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종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금융 본래의 기능(자금중개)과 거리가 멀고, 국제적 관례(과세)와도 맞지 않아 예정대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 종료

15

국립대학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가. 개정취지

- 국립대학병원이 의대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학교, 박물관 등이 수입하는 교육·과학·문화용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감면	○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09, 2012.10.10. 해석에 따라 2013.2.14.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됨)

16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재수입재화의 범위 개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가. 개정취지

-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시키지 않는 등 재화의 특성상 재수입이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 재수입 재화의 범위 ○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재화 ○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재화	○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7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보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결정 및 경정 등에 의해 의무발급 대상자가 된 경우 의무발급 기간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 (단서 신설) －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 부터 의무발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수정신고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18 세금계산서의 선발급 요건 간소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선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요건 간소화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례 ○ 7일 경과 후 대가를 수령한 선세금계산서 적법 요건 -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 공급받는자가 ERP시스템에 보관할 것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9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 관련규제 완화로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액, 거래일자 등 ○ 매입세액 불공제 □ 면세(비과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 매입세액 불공제 ○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한 자는 경정청구, 공급받은 자는 수정신고 (공급받은 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①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속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총괄납부 범위내의 다른 사업장 중 하나로 잘못 기재(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기재) ② 공급하는 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 ○ ①+②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공급하는 자가 신고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이 확인)에는 매입세액 공제 ○ 수정 세금계산서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불필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사업을 시작하는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됨 ☐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것은 공제	☐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고보조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도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 공급가액 기준 안분계산 <대상 추가>	○ 과세·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 겸영사업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 카지노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함께하는 사업인 바 매입세액은 그 전체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안분계산하여야 함(대법원2004두13288, 2006.10.27.)

22 중소기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4조의5 제2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유흥장소 : (개인, 법인) 4/104 ○ 음식점 : (개인) 8/108, (법인) 6/106 ○ 기타 : 2/102	○ (좌 동) ○ (좌 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제조업 : 4/104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3 예정고지세액 산정 기준금액의 합리적 개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예정고지 세액계산 방식 합리화 및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예정고지세액 :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아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의 1/2 ☐ 신용카드 발행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추 가>	☐ 일반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24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 미전송 가산세율 - (법인) '12년까지 0.3%, '13년부터 1.0% - (개인) '13년까지 0.3%, '14년부터 1.0% ○ 지연전송 가산세율 - (법인) '12년까지 0.1%, '13년부터 0.5% - (개인) '13년까지 0.1%, '14년부터 0.5%	☐ 미전송 및 지연 전송에 대한 낮은 가산세율 적용 기한 1년 연장 - (법인) '13년까지 - (개인) '14년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2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 가산세율 : 해당 공급가액의 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6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 시기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 1년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형전환 시기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형전환 (간이 → 일반, 일반 → 간이) ☐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7.1.)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유형전환 시기 ☐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 다음해 (1.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2012년 공급대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 기간은 2013.7.1. 부터 2014.12.31. 까지로 함

27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

가. 개정취지

- 2004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20% (단, 소매업은 2014까지 15%)	전기·가스·증기·수도	5%
전기·가스·증기·수도		소매업	1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농·임·어업	30%	제조업	20%
건설업		농·임·어업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운수 및 통신업	
음식점업	40% (단, 음식점업· 숙박업은 2014까지 30%)	건설업	30%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운수 및 통신업		기타 서비스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6항, 제7항, 제10항)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나. 개정내용

법 개정내용(§26의4)

- ☐ 간이과세자에 대해 예정부과제도(6개월분) 도입

종 전	개 정
<신 설>	☐ 예정부과 방법(법 §26의4①) ○ 관할세무서장은 예정부과세액 납세고지서를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발부(영 §75⑩) ☐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법 §26의4②) ○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한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영 §75⑪) ☐ 예정신고·납부 방법(법 §26의4②④) ○ 부가가치세신고와 함께 납부(영 §75⑥)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법 §26의4⑤) ○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제출(영 §75⑦)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부과(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우대 공제율은 일몰 연장 하되,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 우대 공제율 - 음식·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 : 2.6% (2013년부터 2.0%) - 기타 개인사업자 : 1.3% (2013년부터 1.0%) ☐ 우대 공제한도 : 700만원 (2013년부터 500만원) ☐ 일몰 : 2012.12.31.	☐ 우대 공제율은 일몰 연장, 우대 공제한도는 일몰종료 ☐ 일몰 연장(2014.12.31.) ☐ 일몰 종료 (공제한도 : 5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급·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 문의사항 : ☎ (02) 397-7546~50

1. 주류제조시설의 공통 이용시 승인절차 폐지	298
2.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299
3. 전통주 세율경감 제도 개선	300
4. 주류 첨가재료 추가	301
5. 브랜디·위스키 등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302
6.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303
7. 용도구분 표시제	304
8. 주류 운반 관련사항	305
9. 주정소매업 면허	306
10. 주류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307

주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주류제조업자 등에 대한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직매장의 대지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창고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그 기준을 완화함
- 출고수량이 소정의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3년 동안은 경감세율의 적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함
- 국세청 훈령 및 고시로 정하고 있던 주류의 용도 구분 및 주류의 운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그 근거를 두어 주류 관련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
- 위스키·브랜디 등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을 제고함
- 주류수출입업 면허의 자본금 요건을 삭제하고, 주류수출입업 면허와 특정 주류도매업 면허의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신규 진입 확대를 유도

【관계법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1호) : 2013.2.15. 공포

01 주류제조시설의 공통 이용시 승인절차 폐지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주류 제조관련 규제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하나의 제조시설을 2종류 이상의 주류 제조에 공통으로 사용 ☐ 주류제조용기 세척전문설비를 갖춘 때에는 승인없이 공통 사용	☐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하나의 제조시설을 2종류 이상의 주류 제조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주류제조장에 주류제조용기 세척 전문설비를 갖추어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주류 제조시설을 공통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02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주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제조업자 등의 주류 판매관련 규제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직매장 시설기준 ○ 소주·맥주·위스키·브랜드·청주·과실주·리큐르 등 - 대지 500㎡, 창고 300㎡ 이상 * 탁주·약주·전통주는 적용 제외	☐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 대지 200㎡, 창고 100㎡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직매장 허가신청 분부터 적용

03 전통주 세율경감 제도 개선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전통주 업체의 성장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규모 생산 전통주에 대해 기본세율의 50% 경감 ○ 소규모생산 - 발효주 500kl, 증류주 250kl 이하 ○ 경감대상 - 발효주 연 200kl, 증류주 연 100kl	☐ 졸업 유예제도 신설 ○ 감면대상 소규모 생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후 3년간 주세율 경감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04 주류 첨가재료 추가

(주세법 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 소비자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류 개발 및 경쟁력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탁주, 소주의 첨가재료 ☐ 아스파탐 · 스테비올배당체 · 수크랄로스 ·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 등 ☐ 과실주의 첨가재료 ☐ 당분 · 산분 · 향료 · 색소 ·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 등	☐ 첨가재료 추가 ☐ 효소처리스테비아 · 삭카린나트륨 ☐ 첨가재료 추가 ☐ 아스코르빈산(비타민C)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출고 ·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5 브랜디 · 위스키 등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주세법 시행령 별표3)

가. 개정취지

-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투자확대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브랜디 · 위스키 시설기준 ○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 : 85kl 이상 ○ 저장 및 제성조 용량 : 50kl 이상 ○ 담금(발효)조 용량 : 7kl 이상 ☐ 증류식소주 시설기준 ○ 담금(발효)조 용량 : 6kl 이상 ☐ 일반증류주 · 리큐르 · 기타주류 시설기준 ○ 담금(발효)조 용량 : 6kl 이상	☐ 시설기준 완화 ○ 25kl 이상 ○ 25kl 이상 ○ 5kl 이상 ☐ 시설기준 완화 ○ 5kl 이상 ☐ 시설기준 완화 ○ 5kl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청하는 면허분부터 적용

06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주세법 시행령 별표5)

가. 개정취지

- 주류 수출입업 등의 신규 진입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 자 본 금 : 5천만원 이상 ○ 창고면적 : 66㎡ 이상	☐ 면허요건 완화 <삭 제> ○ 22㎡ 이상
☐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요건 ○ 창고면적 : 33㎡ 이상	☐ 면허요건 완화 ○ 22㎡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청하는 면허분부터 적용

07 용도구분 표시제

(주세법 시행령 제46조)

가. 개정취지

- 영업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현재 국세청 훈령·고시에서는 주류 유통관리를 위해 가정용, 대형 매장용, 면세용 등으로 구분	☐ 가정용, 면세용 등 용도구분을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출고·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08 주류 운반 관련사항

(주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가. 개정취지

- 영업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청 훈령·고시에서 주류 운반시 본인 소유 차량, 임차차량만을 이용하고, 운반차량에 검인 스티커 부착의무 규정	☐ 주류 제조·도매업자·수입업자는 본인 소유차량,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 ☐ 운반 차량에 검인스티커 부착 의무 ○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인스티커 부착의무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출고·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09 주정소매업 면허

(주세법 시행령 별표5)

가. 개정취지

-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정소매업 면허를 다른 면허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정소매업 면허 ○ 요건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청하는 면허분부터 적용

10 주류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주세법 시행령 제48조)

가. 개정취지

- 국세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 제조시설 변동 신고의 대상을 시행령에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허자는 제조·저장·판매 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 * 국세청 훈령에서 구체적인 변동 신고대상을 규정	☐ 신고대상을 시행령에 규정 ○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 ○ 주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제조시설 및 설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1.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312
2. 고급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313
3. 외국군인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314
4. 유류세 신고·납부특례 보완	3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 외항선박·원양어선용 유류 공급명세서 도입	316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317

증권거래세법

1.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신설	318
2.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319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

주요 개정 내용

<개별소비세법>

-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 연장
- 외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석유류의 반입사실 등을 증명할 때 유류공급명세서 제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항선박·원양어선용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목적세를 감안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 신고 누락 및 정확성 여부 검증에 필요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 신속한 민원처리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관계법령】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1601호) : 2013.1.1. 공포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360호) : 2013.2.15. 공포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1603호) : 2013.1.1. 공포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362호) : 2013.2.15. 공포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1615호) : 2013. 1. 1. 공포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364호) : 2013.2.15. 공포

01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개별소비세법 제1조, 부칙 제4조, 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 등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용량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 (에어컨) 월소비전력 370kwh 이상 (냉장고) 월소비전력 40kwh 이상 (세탁기) 1회 소비전력 720wh 이상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 (적용기한) 2012.12.31.	☐ 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 2015.12.31.(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2 고급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시행령 제27조, 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 과세중인 귀금속·시계 등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가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과세대상) - 보석·귀금속 - 고급시계·사진기·용단·모피 등 <추가> ○ (세율) -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가격 중 200만원 초과금액의 20%	(좌 동) - 고급가방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 * 다만, 악기가방 등 가방의 외형·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제품은 과세 제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3 외국군인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부칙 제7조)

가. 개정취지

- 과세중인 외국인관광객과의 과세형평 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유흥음식요금의 10%) 면제 ☐ 주한 국제연합군·미군 주둔지역유흥주점에서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종료

04 유류세 신고·납부특례 보완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의3)

가. 개정취지

-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류세 신고·납부 ○ (원칙) 제조장에서 신고·납부 ○ (특례) 정유소 신고·납부 허용 － 정유소에서 유류를 송유관을 통해 반출하여 저유소에서 혼유가 발생하거나 첨가제를 혼합한 경우 * 저유소의 혼유 등은 제조행위에 해당되어 제조장인 저유소에서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납세편의상 정유소 신고·납부 허용	○ (좌 동) ○ 정유소 신고·납부특례 추가 － 송유관 또는 선박, 탱크로리 등을 통해 운반하여 저유소에서 첨가제를 혼합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1 외항선박 · 원양어선용 유류 공급명세서 도입

(교통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가. 개정취지

-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불법유통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항선박 · 원양어선 등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증빙서류 ☐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허가서	☐ ‘유류 공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4.1. 이후 적용

0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법률 제4667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1조)

가. 개정취지

-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목적세를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법정세율) 휘발유 475원/ℓ, 경유 340원/ℓ * 탄력세율: 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 (적용기한) 2012.12.31.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2013.1.1. 시행	□ 적용기한 3년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015.12.31.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시행시기도 2016.1.1. 로 연기

01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신설

(증권거래세법 제9조의2, 시행령 제6조의3)

가. 개정취지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 (제출의무자) 자본시장법 §8① 상 금융투자업자 ○ (제출자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 주식거래(사인간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이체자료* * 제출자의 인적사항, 거래자의 인적사항, 거래 연월일, 거래대상 주권 등 종목명, 거래 수량 ○ (제출기한)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주권 또는 지분 양도분부터 적용

02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3)

가. 개정취지

-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로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금융투자업자’ ☐ 각 지점이 아닌 본점에서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가능 *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승인제 → 신고제 ☐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청 ☐ 본점일괄납부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 2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재 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황 중 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필

☎ 문의사항 : ☎ (02) 397-7552~4

1.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324
2. 성실사업자 등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325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	326
4.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	327
5.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폐지	328
6.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329
7.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30
8.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31
9. 임대주택 리츠·펀드 세제지원 확대	332
10.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 완화	333
11.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연장	334
12.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	335
13.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종료	336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세원투명성 제고와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해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 납부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감면을 축소하기 위해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자의 최저한세율을 45%로 인상
- 서민 및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하는
대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기한을 종료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1614호) : 2013.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8호) : 2013.2.15. 공포

01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제8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 (신청방법)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누락된 현금거래에 대한 확인 신청 ☐ (제1기분) 9.15.까지 ☐ (제2기분) 3.15.까지	☐ 신청기한 연장 ☐ 1개월 → 3년 ☐ 신청기한 연장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02 성실사업자 등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성실납세문화 조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 대상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②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④ 3년 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등 ○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0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제14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을 부동산임대업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액 이월공제를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대상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 ☐ (공제율) 확인비용의 60% ☐ (공제한도) 100만원 ☐ 최저한세 적용 배제 <신 설>	☐ 대상사업 확대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부담 완화 ☐ 대상 - 부동산임대업 포함] ☐ (좌 동) ☐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04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납부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 감면전 산출세액의 35%	☐ 최저한세율 인상 ☐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분 : 35% (현행과 같음) ☐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 : 4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5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가. 개정취지

- 연금계좌 해지시 발생하는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여 연금계좌의 신규 가입을 유도

* 해지시 해지가산세 외에도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과세(20%)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 연금저축 계약일부터 5년 이내 해지시 - 해약금*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20%) * 자기불입금 + 운용수익 - 해약금 중 자기불입금의 누계액*에 대하여 2% 해지가산세 부과 * 1년당 400만원 한도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 분부터 적용

06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13 신설)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하여 재형저축 비과세 제도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재형저축 비과세 ○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 (세제지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 (저축기간) 만기 7년 + 3년* * 만기 7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의 추가 연장 가능 ○ (사후관리) 중도인출·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 (가입절차)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 (소득확인) 국세청장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 ○ (적용기한) 2015.12.31. 까지 가입 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설된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07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가. 개정취지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투자 : 투자금액의 2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 ☐ (의무보유기간)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정 ☐ (적용기한) 2012.12.31.	☐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소득공제율) - (좌 동) - 투자금액의 20% → 30% } ☐ (좌 동) ☐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08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가. 개정취지

- 농·어업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감면 - 비과세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 - 5% 분리과세 : 여타 배당소득 ○ 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감면 - 비과세 : 1,200만원 이하 - 5% 분리과세 : 1,200만원 초과 ○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감면 - 비과세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14% 분리과세 : 농업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축산업, 임업,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2015.12.31.

09 임대주택 리츠·펀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 (대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집합투자 기구(펀드) ○ (요건) 자산총액 50%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 * 기준시가 6억원 이하·주거전용면적 149㎡이하 임대주택 ○ (세제지원) 배당소득세 감면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5% - 액면가액 1억원 초과 보유주식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 2014.12.31.	□ 액면가액 기준 상향 조정 ○ (좌 동)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3억원 초과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 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3)

가. 개정취지

- 녹색저축 및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녹색저축 과세특례 ○ (세제지원) 3~5년 만기 녹색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원금한도 : (펀드·채권) 1인당 3천만원, (예금) 1인당 2천만원 ○ (의무투자비율) 녹색저축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자산*에 투자 * 정부인증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녹색사업 수익권 등 ○ (사후관리) 3년 평균 녹색자산 투자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금융회사가 소득세 비과세액 납부 ○ (적용기한) 2012.12.31.	□ 녹색자산 의무투자비율 완화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녹색예금 취급기관에 우체국 포함 ○ (의무투자비율 완화) 60% → 40% ○ (사후관리 대상 투자비율 기준 완화) 60% 미만→ 40% 미만 ○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 1. 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2007.6.~2009.12. 기간 중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 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 * 2007.6.~20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 2010.1.1.~2012.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 확대 ☐ 2010.1.1.~2013.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12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비과세 적용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가. 개정취지

-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등 감안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적용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액 40% 소득공제*(근로자) * 다만, 20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납입분까지 공제 허용 ☐ 적용기한 : 2012.12.31. 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종료

13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

가. 개정취지

- 비과세·감면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등 : 5% 분리과세 ☐ 액면가액 1억원 초과 보유주식등 :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종료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 재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 경 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양 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창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심 정 식

☎ 문의사항 : ☎ (02) 397-7573~6

1.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및 사후관리제도 강화	340
2.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	344
3.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	345
4. 8년 자경농지 등 양도세 감면 대상에 세종시 포함 명확화	347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및 사후관리 제도 강화
-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
- 8년 자경농지 등 양도세 감면 대상에 세종시 포함 명확화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4호) : 2013.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8호) : 2013.2.15. 공포

01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및 사후관리제

(1)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 자산에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신 설> ○ (적용기한) 2012.12.31.	○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 주식처분 및 폐지 판정기준 : 통합 후 5년내 50%이상 주식 처분 또는 5년내 사업폐지 ○ (적용기한) 삭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법인이 유상감자*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 5년내 자본금 50%이상 감자 또는 5년내 폐지 ○ (적용기한) 2012.12.31.	○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 5년내 50%이상 처분 ○ (적용기한) 삭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제10항, 제29조 제6항·제7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예외규정을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통합법인·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통합법인·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50%이상을 처분 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80의2⑥ 준용) ○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준용) － 파산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통합법인·신설법인 주식의 50% 이상 처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부터 5년간 유·무상 이전, 유·무상감자 등으로 거주자가 처분한 주식가액이 취득한 주식가액의 50% 이상인 경우

종 전	개 정
<신 설>	○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80의2①1 참고) -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 적격합병, 적격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자산의 포괄적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주식 현물 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02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가. 개정취지

- 농업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비거주자는 감면대상에서 배제
 - 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과 동일하게 양도 유예기간(2년)을 두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을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농업인 요건> ○ (자경) i)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ii)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 ○ (재촌) 농지 소재 또는 인접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내에서 거주·경작	○ 자경·재촌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배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두지 않은 개인(「소득세법」 §1의2) -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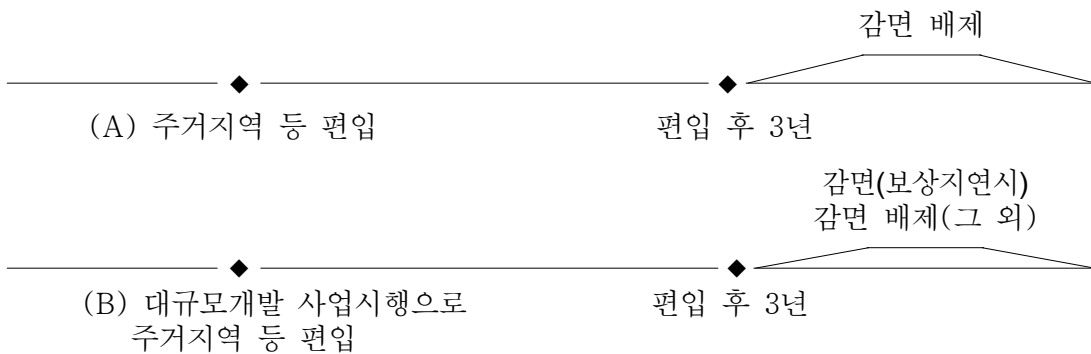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시행일 당시 비거주자인 자가 2015.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부칙 제27호)

03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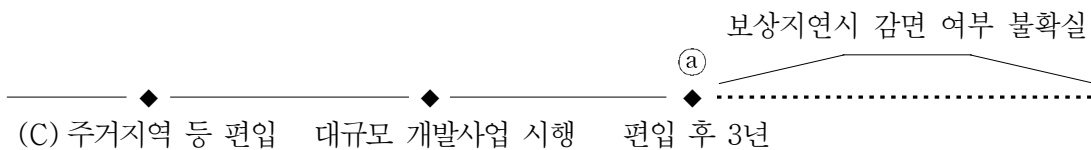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4항, 제66조의2 제1항·제3항, 제67조 제1항·제7

가. 개정취지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 이내 양도 농지(A)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 지연 등으로 3년 경과 양도한 농지(B)에 대해서는 조문상 감면 적용이 명확하나,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 이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되는 경우, 최초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 경과 양도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농지(㉠ 이후)의 감면 여부가 불확실



- 현재 해석상(예규)*으로 동 농지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는바, 이를 조문상 명확히 함

* 자경농지-재산세제과 46014-130('99.4.19.), 대토농지-재산세제과 166('11.3.18.) 특히, 11년 예규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과('11.2.25.) 반영

-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자체 등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이후에는 타인 등에 양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3년 이상, 대토)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 단, 8년 이상 자경 농지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는 감면배제 <신 설> * 현재는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재재산 46014-130('99.4.19.), 재재산-166('11.3.18.)]하여 운영중 ○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는 감면 적용	○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라도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는 감면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4 8년 자경농지 등 양도세 감면 대상에 세종시 포함 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66조의2 제1항, 제6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①, §66의2①, §67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요건에 세종시 포함
 - ※ 개정된 거주자 요건이 각 조 전체에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④, §66의2③, §67⑦의 '시'에 세종시 포함
 - 이 경우 세종시 소재 농지(축사용지 포함)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 세종시 소재 농지(축사용지 포함)의 경우 편입 여부 및 편입 기간과 무관하게 감면대상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①, §66의2①, §67①) ☐ 농지(토지·축산용지)가 소재하는 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연접지역 포함) 등에 거주 <추 가>	☐ '시'에 세종특별자치시 포함하고,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 재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 경 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양 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창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심 정 식

◎ 문의사항 : ☎ (02) 397-7573~6

1.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배제 적용기한 연장	352
--------------------------------------	-----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배제 적용기한 연장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4호) : 2013.1.1. 공포

01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배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 할증률 <table border="1"> <tr> <th>지분율</th><th>대기업</th><th>중소기업</th></tr> <tr> <td>50%이하</td><td>20%</td><td>10%</td></tr> <tr> <td>50%초과</td><td>30%</td><td>15%</td></tr> </table>			지분율	대기업	중소기업	50%이하	20%	10%	50%초과	30%	15%	☐ 적용기한 2년 연장
지분율	대기업	중소기업										
50%이하	20%	10%										
50%초과	30%	15%										
○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201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 재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민 경 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양 건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창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심 정 식

☎ 문의사항 : ☎ (02) 397-7573~6

1.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항구화	356
2.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요건 명확화	357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항구화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요건 명확화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4호) : 2013.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8호) : 2013.2.15. 공포

01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제1항)

가. 개정취지

-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의 재산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도 ○ 주택·토지 등기 ‘명의’가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라도, - ‘실제 소유’하고 있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를 납세의무자로 간주 ○ 단, “’05.1.4.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등기에 한함	☐ “’05.1.4. 이전에” 삭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최초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02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택건설사업자로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토록 조문상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종합합산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 주택건설사업자(i ~ iv)가 취득 i)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ii)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ii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등 iv) 「법인세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 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명확화 ☐ 주택건설사업자(i~iv)가 보유중이거나 새로이 취득 (좌 동)
☐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최초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 문의사항 : ☎ (02) 397-7562~5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64
2.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에 일반도시가스업 추가	365
3.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에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366
4.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67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	368
6. 알뜰주유소 전환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확대	369
7.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산식 조정	370
8.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R&D비용 세액공제 구간 신설	371
9.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372
10.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배제 ·	374
11.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를 정기급여로 한정	375
12.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	376
13.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77
14. R&D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378
1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379
16.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80
17.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시설 공제율 인상	381
18.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 명확화	382
19.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	383
20.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시설 추가	384
21.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합리적 개선	385
2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386

23.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	388
24. 합병·분할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명확화	389
25.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91
26.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92
27.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393
28. 제약회사간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94
29.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95
30.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	396
3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397
32.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398
33.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 조합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399
3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추가	400
35.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402
36.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03
37.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404
38.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05
39.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 손금산입특례 신설	406
40. R&D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학교 추가	407
4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408
4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율 인상	411
43. 제주개발관련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412

차례

4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413
45. 금융중심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414
46.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 세액감면 대상지역 추가	415
47.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416
48.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 기준 명확화	417
49. 법인·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조정	418
50.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419
51. 조세지출 종합평가 대상 및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방법	420
52. 「성장동력 확충 지원」 관련 적용기한 연장	421
53. 「비과세·감면 정비」 관련 적용기한 종료	422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 판매업 중 알뜰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적용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지원
- R&D 세액공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현행 직전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에서 직전 과세연도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직전 4년간 발생한 R&D비용의 연평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만 적용함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일반기업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안은 3%에서 2%로, 수도권 밖은 4%에서 3%로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2%에서 3%로 인상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
-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4년에서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4호) : 2013.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8호) : 2013.2.15.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22호) : 2013.2.23. 공포

0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대상업종) -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관광사업, 출판업, 광고업, 음식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02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에 일반도시가스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지방 중소도시 도시가스 보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대상 업종은 아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전문 디자인업 등 41개 업종	☐ (좌 동)
<추 가>	☐ 일반도시가스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3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에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코목,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41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8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6개) 등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전문 디자인업 등 <추 가>	○ (좌 동) ○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투자(투자세액공제)·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거나, 개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4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가. 개정취지

- 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다음 설비에 투자한 경우 손금산입 허용 (익금불산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급 받는 출연금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설비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0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27호)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대상 -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후 3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후 3년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감면업종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추 가> ☐ 적용기한 : 2012.12.31.	☐ 감면 기간 : 4년 → 5년 (좌 동)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 사업자)·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는 분부터 적용

06 알뜰주유소 전환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알뜰주유소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통한 유류 가격 안정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소매업의 경우) ○ 소기업 : 10% ○ 지방 소재 중기업 : 5% ※ 수도권 소재 중기업은 감면 없음	○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시 2년간* 20% 감면(수도권 소재 중기업도 포함) * '12년·'13년 발생소득분 *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 주유소 상표로 영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7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산식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부칙 제36조)

가. 개정취지

- R&D비용 증가분방식의 세액공제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가분방식 R&D 비용 세액공제 ☐ 증가분 산식 : 당해연도 R&D 비용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 공제세액 : 증가분 × 공제율 <table><tr><th>구 분</th><th>공 제 율(%)</th></tr><tr><td>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td><td>50</td></tr><tr><td>일반기업</td><td>40</td></tr></table>		구 분	공 제 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50	일반기업	40	☐ 증가분 산식의 조정 ☐ 증가분 산식 : 직전 3년 평균 R&D 비용 ('13) → 2년 평균('14) → 직전연도('15 이후) ☐ 단,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구 분	공 제 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50							
일반기업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8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R&D비용 세액공제 구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기분 방식* R&D비용 세액공제 * 당해연도 R&D 비용 × 공제율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공 제 율(%)</th></tr><tr><th>일 반</th><th>신성장·원천기술</th></tr><tr><td>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td><td>25</td><td>30</td></tr><tr><td>이후 1~3년차</td><td>15</td><td rowspan="3">20</td></tr><tr><td>이후 4~5년차</td><td>10</td></tr><tr><td>일반기업</td><td>3~6**</td></tr></table>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중견기업의 범위 신설>	구 분	공 제 율(%)		일 반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25	30	이후 1~3년차	15	20	이후 4~5년차	10	일반기업	3~6**	□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공제율 구간 신설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공 제 율(%)</th></tr><tr><th>일 반</th><th>신성장·원천기술</th></tr><tr><td>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td><td>25</td><td>30</td></tr><tr><td>이후 1~3년차</td><td>15</td><td rowspan="4">20</td></tr><tr><td>이후 4~5년차</td><td>10</td></tr><tr><td>중견기업</td><td>8</td></tr><tr><td>일반기업</td><td>3~6</td></tr></table> ○ 중견기업의 범위(아래 i, ii, iii 요건 모두 충족) i)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i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iii)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구 분	공 제 율(%)		일 반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25	30	이후 1~3년차	15	20	이후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구 분		공 제 율(%)																															
	일 반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25	30																															
이후 1~3년차	15	20																															
이후 4~5년차	10																																
일반기업	3~6**																																
구 분	공 제 율(%)																																
	일 반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25	30																															
이후 1~3년차	15	20																															
이후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8)

가. 개정취지

-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 신성장동력(11개 분야 62개 기술) *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추 가> － 원천기술(18개 분야 28개 기술) * 연료전지·2차전지, 원자력 등 <추 가>	○ (좌 동) － 백신* *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 항원에 대한 기술을 접목한 치료 및 예방목적의 백신 제조 기술 － 임상평가 기술* *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 신약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 등을 위한 평가기술 *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 신약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을 위한 평가기술

종 전	개 정
<추 가>	－ 혁신형 개량신약* *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 기술: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제조하는 기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특례제한법」 §10의2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	(좌 동) － 「조세특례제한법」 §10의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를 정기급여로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가. 개정취지

- R&D비용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 인건비. 다만, 다음 항목은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신 설>	(좌 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금* * 차액보전형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배분상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가. 개정취지

- 비전담부서에서 발생한 R&D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	○ (좌 동) － 다만, 전담부서 등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함

13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 (일반 R&D보다 우대 적용) ☐ 공제율 : 당해연도 발생액 × 20% (중소기업 30%) ☐ 세액공제 대상 - 신성장동력(11개 분야 62개 기술) *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 원천기술(18개 분야 28개 기술) * 연료전지·2차전지, 원자력 등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illegible]

1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가. 개정취지

-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대전, 대구,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16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가. 개정취지

- 첨단기술설비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시설 :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지식관리시스템 등 ○ 공제율 : 3% (중소기업 7%) ○ 적용기한 : 2012.12.31.	○ (좌 동) ○ 적용기한 : 2014.12.31.(2년 연장)

17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시설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 산재예방 등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 유도
-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설 적극 투자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 시설 : - 산업재해예방시설,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등 - 기술유출방지시설 ○ 공제율 : 3% <신 설> ○ 적용기간 : 2012.12.31.	○ 공제율 : 3%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시설 투자 : 7% ○ 적용기간 : 2014.12.31.(2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가. 개정취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 ○ 저온보관고 등 ○ 탱크시설 -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것에 한함)	- 반출 → 반입·반출 -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것에 한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

19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

가. 개정취지

- 전기절약시설 투자 확대 및 전력 소비절감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LED조명, 무정전 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 <추 가> <추 가>	○ (좌 동)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전력저장장치 ○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우수 제품으로 인증한 자동절전제어장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0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시설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

가. 개정취지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대상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추 가> ○ 공제율 : 10% ○ 적용기한 : 2013.12.31.	○ 대상시설 추가 - 온실가스 감축시설 · 이산화탄소(CO₂)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 메탄(CH₄)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 아산화질소(N₂O) 재사용 및 분해 기술 · 불소화합물(HFCs, PFCs, SF₆)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1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합리적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일반기업에 대해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관련 있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 대기업 등 일반기업이 고용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본공제를 배제하여 일자리 창출기능 강화하되,
 -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세액 공제율				○ 공제율 조정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	수도권밖			수도권내	수도권밖	
기본공제 ¹⁾ (고용감소시배제)	3%	4%	4%	기본공제	2%	3%	4%
추가공제 ²⁾ (고용증가비례)	2%	2%	3%	추가공제 ²⁾ (고용증가비례)	3%	3%	3%
합 계	5%	6%	7%	합 계	5%	6%	7%
1) 기본공제 : 전년대비 고용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적용 2) 추가공제한도 : 마이스터고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1) 기본공제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투자 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2)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대상 서비스 업종의 범위를 확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를 통한 지역주민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경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

*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 ○ 대상 업종 (총 32개 업종)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 <추 가>	○ 대상 업종 확대 (15개) ○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종 전	개 정
<추 가>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3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 합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가공제대상 청년근로자 범위 ○ 15세 이상 ~ 29세 이하인 자	☐ 청년근로자 범위 확대 ○ 15세 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 (최대 6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4 합병·분할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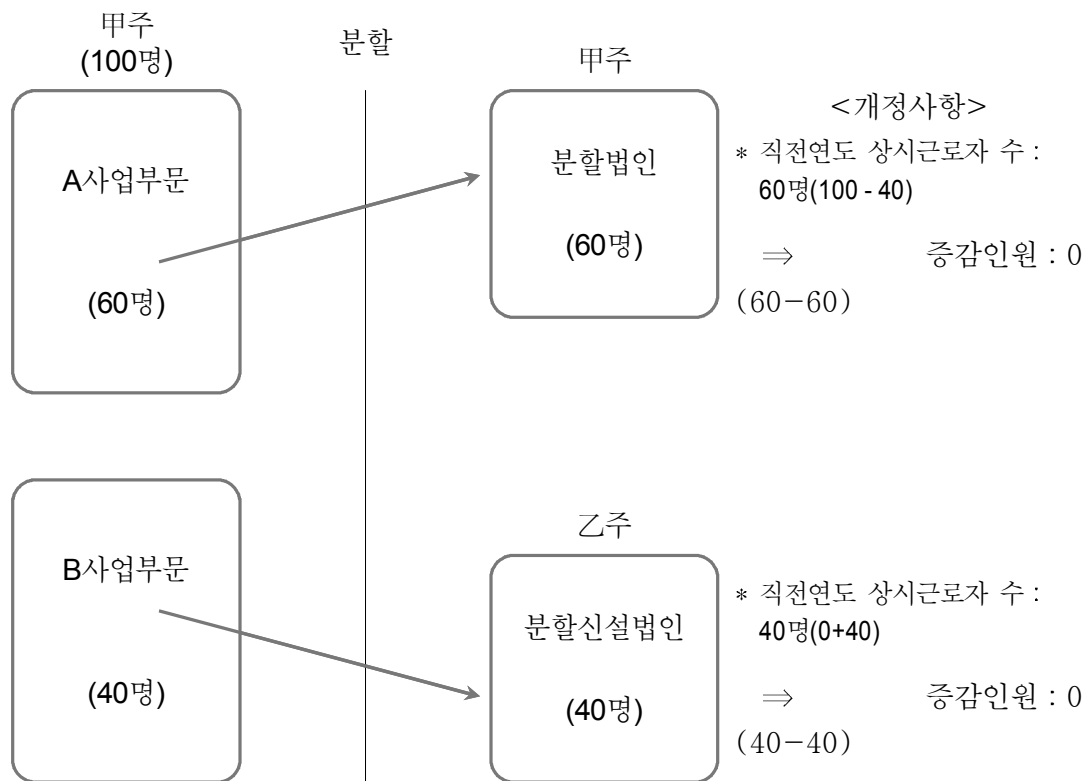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6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합병·분할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에 증감이 없음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감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창업 : 0 ☐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 종전사업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 - 종전사업을 승계한 기업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 <신 설>	- 종전사업을 승계시킨 기업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



25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가. 개정취지

- 군 전역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군 미필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군 전역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신청자) 중소기업 ○ (고용·복직자) - (고용)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 교육 일반고등학교 졸업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닌한 자를 고용 - (복직) 상기 고용된 자가 군 등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 (세액공제)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 * 근로대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적용기한) 2017.12.3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비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26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가. 개정취지

- 경영상 어려움에도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를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중 전	개 정
☐ 고용유지 중소기업* *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이상 감소 또는 재고량 50%이상 증가 중소기업 ☐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소속 근로자 ☐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27 사업전환 ·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5년이상 영위한 업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다른 지원업종으로 전환 ** FTA피해업종을 다른 지원업종으로 전환 ☐ 소득세 · 법인세 4년간 50% 세액감면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28 제약회사간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4)

가. 개정취지

- 제약회사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모든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 (요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특례)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 2012.12.31.	☐ 제약회사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한해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대상) 제약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좌 동) ☐ 적용기한 : 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9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가. 개정취지

-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 거래정상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 소득 소득공제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요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연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 (미입주 주택)하여 임대 ○ (특례)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5년간 소득금액의 50% 공제 ○ 적용기한 : 2012.12.31.	☐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좌 동) ○ 소득공제율 50% → 100%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주택을 신축·매입하여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

법률개정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 과세이연 대상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중전부동산’에서 ‘중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화

가. 개정취지

- ‘중전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중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명시된 건축물과 그 부지로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중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과세특례)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대상 부동산) 수도권에 있는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	○ (좌 동) ○ 대상 부동산 범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중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매각 시기 및 방법이 규정된 건축물과 그 부지
○ 적용기한 : 2015.12.31.	○ (좌 동)

3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가. 개정취지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 소득세 4년간 50% 감면 *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 제고

33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 조합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

가. 개정취지

- '13년부터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을 하게 됨에 따른 조합법인들의 부담 완화
- '12사업연도까지 기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익금에 환입하지 않고 향후 추가 적립분만 세무조정토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①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2013년) 퇴직급여추계액 × 15% ○ (2014년) 퇴직급여추계액 × 10% ○ (2015년) 퇴직급여추계액 × 5% ○ (2016년) 퇴직급여추계액 × 0%	① (좌 동)
② 위 ①의 한도내로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향후에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익금에 환입하지 않음(「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신 설>	② (좌 동) ○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법인의 '12사업연도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①에 따라 적립한 것으로 하여 향후 익금에 환입하지 않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공익성이 큰 단체들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 ☐ 사립학교(초·중·고·대학) 등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등 <추 가>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치과 병원, 국립암센터 등 <추 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예술의 전당, 전문예술법인 등 ☐ 국제행사 조직위원회(8개)*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 포물러원국제자전거경주대회조직위,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	☐ 대상법인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좌 동)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 (좌 동) ☐ (좌 동) ☐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 (좌 동) ☐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추가 및 삭제 - (추가 : 2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조직위, 2018 평창동계 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 올림픽대회 조직위 - (삭제 : 2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조직위

종 전	개 정
☐ 수익사업 소득의 8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외 지역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5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가. 개정취지

-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수 10인 이상(고용 비율 3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등의 기준을 갖춘 사업장	☐ 감면 확대 ○ 4년간 50% → 5년간 5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

36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가. 개정취지

- 주거 안정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시설 : 종업원용 기숙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국민주택,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용 휴게실·체력단련실 등 ○ 공제율 : 7%* * 지방 미분양 기숙사·임대주택과 직장어린이집 : 10%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37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가. 개정취지

-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 소득 : 산림경영계획, 특수 산림사업지구사업*에 의한 산림, 채종림, 산림보호구역 산림을 10년 이상 조림한 후 벌채·양도한 소득 * 산림자원의 조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면액 : 벌채, 양도소득의 50%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38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가. 개정취지

-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 ① 또는 ② ① 직전연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분 ② 당해연도 제3자 물류비중이 30% 초과시 그 30% 초과분 ○ 공제율 : 3%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39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 손금산입특례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가. 개정취지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기관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 손금산입 ○ 적용기한 : 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0 R&D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학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가. 개정취지

- 특성화고 등의 직업훈련시설 확충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시설*의 학교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 기부금액의 10% 세액공제 ☐ 기부받는 학교의 범위 - 대학교 <추 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시설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4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21, 제115조의

(1) 해외사업장 유지방식 추가 및 해외사업장 철수기한 연장

가. 개정취지

-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를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사업장 철수방식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요건 (a) 또는 (b) ① (先복귀-後폐쇄) 국내사업장 개설 후 2년 이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② (先폐쇄-後복귀)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내 국내사업장 개설 ○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① 해외사업장 철수기한 연장 (2년 → 4년) ② (좌 동) - 관세 : 중소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해 5년간 100%감면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외사업장 유지방식*에 대한 세액감면 * 부분매각, 생산물량 감축 등 ○ (감면요건) 국내생산시설이 없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일 것 ○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 관세 : 자본재 수입에 대해 5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 국내복귀대상 사업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복귀대상 사업자 ☐ 내국인	☐ 사업자의 범위 조정 ☐ 해외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 포함) 또는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의2)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내복귀기업의 관세감면 대상 기준 등 규정 ☐ 감면대상 자본재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자본재 -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 이내 수입되는 자본재 ☐ 추정 기준, 감면신청 절차 등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4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가. 개정취지

- 석유제품 경쟁촉진 및 거래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 다수의 판매자(정유사 등)와 수요자(대리점, 주유소 등)가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 온라인 사이트 ○ 공제대상자 :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등) 공급자 ○ 공제율 :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 적용기한 : 2013.12.31.	○ 공제율 인상 (0.3% → 0.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3 제주개발관련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21조의9)

가. 개정취지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투자진흥지구 · 제주자유무역지역 조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에 생물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관광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도 내에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4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가. 개정취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아시아 문화의 연구 등 일련의 활동이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도시(광주시 지정)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45 금융중심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가. 개정취지

- 금융중심지 조성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국제금융허브 조성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실시 되는 곳으로 금융위가 지정하는 지역(부산 문현동)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46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 세액감면 대상지역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5호·제6호)

가. 개정취지

-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시설 등의 사후활용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세액감면 ○ 대상지역 - 기업도시 - 신발전지역 <추 가>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2012 여수Expo 조성사업구역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8조)

가. 개정취지

- 기업도시 조성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도시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 적용기한 : 2012.12.31. ○ 입주기업 경과조치* * 2012.12.31.까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14년말까지 입주시 세액감면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 입주협약·양해각서 체결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 1년 연장 (2012.12.31. → 2013.12.31.) － 다만, '13년에는 수도권기업이 입주 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

48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 기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장 구분경리시의 중복지원 배제기준을 명확화
 -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법령에 반영(조세특례제도과-284, '10.3.23.)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의 배제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건을 둘 다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 * 중복판정기준이 사업자 기준인지, 사업장 기준인지 불분명	○ 사업장을 구분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

49 법인·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가. 개정취지

- 납부여력이 있는 대기업 등의 과도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법인 최저한세율 <table><tr><th colspan="3">과세표준 규모별</th></tr><tr><td>100억원 이하</td><td>100억원~1000억원</td><td>1000억원 초과</td></tr><tr><td>10%</td><td>11%</td><td>14%</td></tr></table>	과세표준 규모별			100억원 이하	100억원~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1%	14%	○ 일반법인 최저한세율 조정 <table><tr><th colspan="3">과세표준 규모별</th></tr><tr><td>100억원 이하</td><td>100억원~1,000억원</td><td>1,000억원 초과</td></tr><tr><td>10%</td><td>12%</td><td>16%</td></tr></table>	과세표준 규모별			100억원 이하	100억원~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2%	16%
과세표준 규모별																			
100억원 이하	100억원~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1%	14%																	
과세표준 규모별																			
100억원 이하	100억원~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2%	16%																	
○ 중소기업 : 7% – 유예기간 이후 1~3년간 : 8% – 그 후 2년간 : 9% ○ 개인 사업소득자 최저한세율 – 감면전 산출세액의 35%	○ (좌 동) ○ 개인 사업소득자 최저한세율 –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분 : 현행과 같음 –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 : 4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0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142조의2)

가. 개정취지

- 조세지출에 성과관리 요소 도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지출예산서 ☐ 근거법규 : 「국가재정법」 <추 가> ☐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3.31.까지) <추 가> ☐ 각 부처는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를 작성하여 매년 5.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 ☐ 조세감면평가서* 내실화 * 적용기한 종료대상, 시행후 2년 미경과, 감면확대 사항 등 <추 가> <신 설>	☐ 「조세특례제한법」 상 근거마련 - 소관부처, 정책목표, 목표달성도, 세출 예산과의 연계내용 등 성과정보 추가 ☐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 ☐ 제출기한 단축 ☐ 5.31. → 4.30. ☐ 각 부처의 조세감면평가서 전달기관 등에서 작성지원 및 평가 검증 ☐ 주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전달기관 등에 조사·연구 위탁

51 조세지출 종합평가 대상 및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제135조의2)

가. 개정취지

- 조세지출 성과관리 신설에 따른 종합평가 대상 규정 및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방법 상세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지출 종합평가 대상 (i)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ii)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iii)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 조세지출예산서 세부작성사항 ○ 작성 내용 및 자료제출 요청대상 기관 등 ※ 조세지출예산서 근거법규 이관(국가재정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위임규정 이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부터 적용

52 「성장동력 확충 지원」 관련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등)

제 도	연 장 이 유	적용기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13)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지속 지원	2년 연장 (‘14.12.31. 까지)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38의2)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 등을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38의3) - 주주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40) -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면제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44)	기업구조조정 및 투자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52)	부실금융기관 정상화와 예금자 보호를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66~68)	한·미, 한·EU FTA의 발효에 따라 농어업에 대해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4의12)	금융소외자의 회생지원을 위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해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기업도시·신발전지역 개발사업 구역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85의3)	기업도시·신발전지역의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등)

제 도	주 요 내 용	종료이유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34)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 상당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업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46)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양수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39)	－ (법인) 채무감소액을 3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법인주주) 채무 인수·변제액을 손금산입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45)	－ (법인)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 (주주) 주식 장부가액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47의3)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법인이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현행 「법인세법」상 합병과세특례 규정으로 충분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므로 제도의 실익 없음
행복도시·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85의2)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예정지구내 공장을 지방이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장토지·건물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금년말로 사업시행자에게로 양도가 종료될 예정이므로 적용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원천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재 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황 중 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필

☎ 문의사항 : ☎ (02) 397-7552~4

1.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및 공제율 조정	426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427
3.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428

조세특례제한법 (원천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30%로 인상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4호) : 2013.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8호) : 2013.2.15. 공포

01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및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대중교통 이용 유도와 직불형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 (공제율) ○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 : 30% <추 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 (공제한도) 3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추 가>	☐ (좌 동) ☐ 공제율 조정 ☐ (좌 동) ○ 대중교통*비 사용분 : 30%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 현금 영수증 : 20% → 30% 신용카드 : 20% → 15% ☐ 공제한도 확대 ☐ (좌 동) ○ 대중교통비 사용분 : 추가 1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0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적용 기한을 연장하되, 국내근로자(최고세율 38%)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 간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인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 적용기한 : 2012.12.31.	○ 15% → 17% ○ 적용기한 : 2014.12.31.(2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3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가. 개정취지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등 출자, 신용카드 * 공제한도 초과분 이월공제 가능 ○ 한도 제외 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비용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만, 2012년까지 지급한 지정기부금, 창투조합 등 출자공제분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남 옥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제조사관 안 동 숙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제조사관 유 원 재

◎ 문의사항 : ☎ (02) 397-7542~3

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	432
2. 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 범위 확대	433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434
4.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	435
5. 외국투자자의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436
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외국투자자에 대한 부당한 대여금 제외	437
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규정 합리화	438
8. 비거주자 등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440
9.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접수창구 확대	441
10. 외국단체에 대해 동업기업 조세특례 허용	442
11.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 개선	444
12. 양도시 과세가 면제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445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을 통하여 투자 위험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유치 및 개발 지원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 형식적인 외국인투자에 의한 부당한 조세감면을 방지할 위해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외국투자가에 대한 부당한 대여금 제외
- 외화조달구조의 안정화 및 외화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비거주자 등의 1년 만기 이상 외화예금에 대한 세제지원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4호) : 2013.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8호) : 2013.2.15. 공포

0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가. 개정취지

○ 투자위험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 현재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동 특례유지를 통한 수익성 보전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면제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면제 * 농·축·수·임산물 및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사업(가공업 포함) ○ (적용대상) 내국법인 ○ (감면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 ※ (선택적용)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 가능 ①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22) ②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법인세법」 §57③) ○ 일몰기한 : 2012.12.31.	○ 일몰연장 : 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2 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 범위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 경력 및 학위*를 소지하고 다음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2년간 근로 소득세 50%감면 * 경력 5년 or 경력 3년 + 학사 학위 이상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추 가>	☐ 대상추가 (좌 동) ○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 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제1항)

가. 개정취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유치 및 개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을 신주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일몰기한 : 2012.12.31.	○ 일몰 2년간 연장 : 201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04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고부가가치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 감면*대상 업종 및 최소투자금액 * 법인세 등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제조업 : 3천만불 ○ 관광업 : 2천만불 ○ 물류업, SOC : 1천만불 ○ R&D : 2백만불 <추 가>	☐ 감면대상 추가 (좌 동)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 3천만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05 외국투자자의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신설)

가. 개정취지

○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 명확화

-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 총배당액을 과세소득분과 감면소득분으로 각각 구분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산출 (예규) ○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서식 부재	□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 감면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 ※ 납부세액 = Min[①, ②] ① 감면후 배당세액 = (총배당액 - 감면대상 배당액) × 국내세율 ② 총배당액 × 제한세율 ○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서식신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

0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외국투자가에 대한 부당한 대여금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1항)

가. 개정취지

- 형식적인 외국인투자에 의한 부당한 조세감면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 금액에서 제외 ○ 내국인이 10% 이상 소유하고있는 외국 법인이 외국인투자시 내국인지분상당 투자액 <추 가>	☐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여금을 추가 ○ (좌 동) ○ 외투기업 및 외투기업의 내국인주주*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에 한정 ☐ 제외대상 대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감면 대상 대여금 배제방법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비율 ×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 적수 - 제외대상 대여금 적수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 적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감면세액 추징방법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 감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 외국투자자의 주식 양도(감면개시후 3년내 양도시) : 법인세, 관세 감면세액 $\times (1 - \text{경과월수} / 36) \times \text{주식양도비율}$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폐업, 조세 감면기준 불충족, 시정명령 불이행 : 소급하여 5년(관세 3년)이내 감면세액 □ 2 이상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방법 불명확	□ 추징강화 및 추징사유 구체화 ○ 주식양도시 추징강화 － (법인세) : 감면기간(5~7년)내 양도시 소급하여 5년내 감면세액 $\times$ 주식양도 비율 － (관세) : 소급하여 3년내 감면세액 중 양도후 외국투자자의 잔여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한 감면 세액 ○ 조세감면기준 불충족 사유 구체화 : 투자금액, 업종, 시설설치, 고용인원 기준 위배시 적용 □ 2이상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세액 한도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징사유 적용

종 전	개 정
☐ 외투기업 폐업에 의한 감면세액 추정시 폐업일 기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 <추 가>	☐ 다음 중 빠른 날 ☐ (좌 동) ☐ 세무서장이 직권말소한 경우 등록말소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추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08 비거주자 등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

가. 개정취지

- 외화조달구조의 안정화 및 외화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1년 만기 이상 외화예금에 대한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비과세대상 및 요건 －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비거주자, 외국법인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금융 감독원의 약관승인을 얻은 외화정기예금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기간까지 원금·이자의 인출이 없을 것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 감면추징 : 계약의 해지나 중도 인출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 중도에 인출 및 해지한 경우라도 1년 동안 인출없이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 계약갱신시 간주규정 － 비과세요건을 갖춘 예금으로 갱신하는 경우 갱신일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 ○ 일몰 : 비거주자 등이 20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정기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09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접수창구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3)

가. 개정취지

-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감면신청서 접수기관 ☐ (원칙) 기획재정부장관 ☐ (예외)자유무역지역의 경우 :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 * 감면결정·통지 권한까지 보유 <추 가>	☐ 감면신청 접수창구 추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 외국환은행의 장 * 접수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10 외국단체에 대해 동업기업 조세특례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00조의26,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제100조의27)

가. 개정취지

- 국내 사업체와의 형평을 기하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투자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 민·상법상 조합 등 국내 사업체 <추 가>	☐ 적용대상 확대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단체 * 국외공동사업체의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특례적용 (i) 동 특례를 적용받는 국내 사업체 (PEF제외)와 유사한 단체 (ii)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iii) 외국단체의 설립지국에서 동업기업 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종 전	개 정
□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조합)의 경우 ○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사업연도 등 관련 규정*을 적용 *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세액감면, 원천징수·가산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 외국단체가 동업기업인 경우 ○ 그 동업기업을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규정을 적용 * 국내단체의 경우 : 내국법인 외국단체의 경우 : 외국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 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18)

가. 개정취지

- 외국 연·기금 등이 국내PEF에 투자할 때와 국외 PEF에 투자할 때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내 PEF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 PEF에 수동적 동업자로 투자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 PEF에서 배분받는 소득을 원천에 관계 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 └ 조세조약 체결시 : 5~15% 세율 └ 조세조약 미체결시 : 20% ※ 국외 PEF를 통해 국내 투자시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 양도소득은 대부분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므로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 국내 PEF에 투자한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기금 등*으로서 배분 받는 소득이 해당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 이자·배당소득 : 5~15% 세율 └ 주식양도소득 : 조약상 거주지국 과세 채택시 비과세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설립된 다음중 하나의 기관 · 정부, 지자체, 중앙은행,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 · 「국민연금법」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의 연금 ·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 분배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 등으로 실질적 조세부담이 없을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2 양도시 과세가 면제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이 발행한 다음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외화증권 － 다만, 과세대상 주식 등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일정한 경우 제외 ○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것은 제외	□ 면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 비거주자등이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모집·매출되는 주식 등 취득·양도시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양도한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서 기 관	김 용 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만 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동 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허 남 승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정 인 선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심 정 식

◎ 문의사항 : ☎ (02) 397-7546~50

1. 국내개최 국제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450
2. 구내식당(공장·학교 등)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452
3. BTO 방식으로 건설한 학교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학교시설의 범위 명확화	453
4.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454
5.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455
6. 천연가스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456
7.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457
8.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영세율 일몰 연장	458
9.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연장	459
10.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기준금액 조정	460
11.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461
12. 고급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 연장	462
13. 면세유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463
14. 영세율 적용대상 임업인의 범위 조정	464
15.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465
16.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확대	466
17. 면세유 한도량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등 신설	467
18. 출고지시서 등 교부요건 명확화	468
19.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469
20.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환급창구 허용	470
21.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반출확인방법 변경	471
22.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472
23. 제주도여행객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를 미화기준으로 조정	473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어업용 화물자동차·경운기·트랙터 등 추가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2톤이상 4톤미만 농업용로더, 농업용·어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농업·어업기계보유 현황 신고주기를 1년으로 강화
-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 부당교부시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제재 근거 명확화
-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확대함으로써 어민부담 경감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1614호) : 2013.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8호) : 2013.2.15. 공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9호) : 2013.2.15. 공포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70호) : 2013.2.15. 공포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71호) : 2013.2.15. 공포

01 국내개최 국제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16조, 시행령 제106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①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일몰 : 2013.12.31. ② 포틀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 대회관련 수입물품(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부가가치세 면제 ○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일몰 : 2016.12.31. ③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 대회 관련 수입물품(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부가가치세 면제 ○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일몰 : 2013.12.31.

종 전	개 정
<신 설>	④ 2013 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 대회관련 수입물품(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 : 2013.12.31. 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 대회관련 수입물품(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부가가치세 면제 ○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일몰 : 201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부가가치세) 수입면세 : 2013.1.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공급면세 : 2013.2.2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인지세) 2013.1.1. 이후 과세문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구내식당(공장·학교 등)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학생·근로자의 식비부담 경감을 통한 복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제공하는 직영급식 또는 위탁급식 ☐ 대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제공하는 직영급식 ☐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등의 경우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직영급식 ☐ 일몰 : 2012.12.31.	☐ 일몰 3년 연장 : 2015.12.31.

03

BTO 방식으로 건설한 학교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가. 개정취지

- 대학의 민자사업 유치를 통한 학교시설 확충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등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학교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설관리 운영권 : 면세 ☐ 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면세 <신 설>	○ 시설범위 명확화 －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 적용기한 : 2012.12.31.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	☐ 일몰 2년 연장 : 2014.12.31.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

04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농림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15조의3 제1항 제2항 제5항)

가. 개정취지

- 어민의 영업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 선박 ○ 시설(김, 오징어 건조시설 등) <신 설>	○ (좌 동) ○ (좌 동) ○ 어업기계 - 어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 - 어업용 경운기 - 어업용 트랙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

05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 및 농가부담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업 경영 등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 : 2012.12.31.	○ 일몰 3년 연장 : 2015.12.31.

06 천연가스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

가. 개정취지

- 친환경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 보급확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 : 2012.12.31.	○ 일몰 3년 연장 : 2015.12.31.

07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가. 개정취지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 확대 및 농산촌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산물 중 목재펠릿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 : 2012.12.31.	○ 일몰 3년 연장 : 2015.12.31.

08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영세율 일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

가. 개정취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일몰 : 2012.12.31.	○ 일몰 3년 연장 : 2015.12.31.

09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대중교통인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확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사업시행자 ○ 일몰 : 2012.12.31.	○ 일몰 3년 연장 : 2015.12.31.

10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기준금액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현금영수증 발급·전송에 소요되는 적정원가를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금액 ○ 건수 당 22원을 기준으로 $\pm 30\%$ 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 기준금액 하향조정 - 건수 당 18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11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금거래소를 통해 금지금이 거래될 때까지는 현행 면세 금지금제도 유지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 : 2012.12.31.	○ 일몰 1년 연장 : 2013.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제1항)

○ 고금 거래 양성화 유도 및 귀금속산업 발전 지원

종 전	개 정
□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 금은방 등이 개인 등으로부터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 매입세액 공제 ○ 일몰 : 2012.12.31.	○ 일몰 1년 연장 : 2013.12.31.

13 면세유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

가. 개정취지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면세유 취급제한기간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 판매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취급제한기간 ☐ 3년	☐ 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4 영세율 적용대상 임업인의 범위 조정

(농림특례규정 제2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임업인 경비절감을 위해 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에 산림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대상 임업인 범위 ○ 영림업 또는 벌목업 종사자(법인 제외) <추 가>	○ (좌 동) ○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임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임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분에 한함) * 임업용 원치, 트랙터부착형 또는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및 타워야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농림특례규정 제15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보유현황 신고 주기를 단축하여 사후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 주기 ☐ 2년 <단서 추가>	☐ 농업·어업기계 보유현황 신고 주기 ☐ (좌 동) ☐ 1년(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계*) * 2톤이상 4톤미만 농업용로더, 농업용·어업용 화물자동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확대

(농림특례규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가. 개정취지

- 시간계측기 대체 장치를 확대함으로써 어민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 시간계측기 ☐ 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 <추 가>	☐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확대 ☐ (좌 동) ☐ (좌 동) ☐ 어선위치발신장치 ☐ 선박건조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1. 이후 사용실적 신고서를 제출하는 선박부터 적용

17 면세유 한도량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등 신설

(농림특례규정 제22조의2)

가. 개정취지

- 법에서 구체적 내용을 위임함에 따라 한도량 신청 시기, 신청시 첨부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면세유 한도량 신청 및 관리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연간 한도량 신청 (산출근거, 전년도 사용량 첨부) ○ 결정된 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추가신청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8 출고지시서 등 교부요건 명확화

(농림특례규정 제20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 부당교부시 수협에 대한 제재 근거 명확화
 - * 수협이 증거서류 미확인 등 관리부실로 출고지시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 가산세 징수(「조세특례제한법」 §106의2⑪)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산업협동조합의 출고지시서 등 교부 ☐ 최근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후 출고지시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음	☐ 최근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를 제출 받은 후 출고지시서 등을 교부하여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19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규정 별표4, 5, 6)

가. 개정취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추 가>	☐ 착색제*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면세유(휘발유) 착색제
☐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 <추 가>	☐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
☐ 사후환급 어업용 기자재 <추 가>	☐ 어업용 산소발생기 ☐ 양식장용 액화산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 또는 수입신고(사후환급 기자재)하는 분부터 적용

20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환급창구 허용

(외국인관광객특례규정 제5조의2, 제10조의4)

가. 개정취지

- 외국인의 환급 편의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창구 ☐ 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 등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 ☐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 <신 설> <신 설>	☐ 시내환급창구 허용(지역제한 폐지) ○ <삭 제> ☐ 시내환급의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신설 ☐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시내 등에서 이미 환급받은 경우 제외) ☐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물품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반출확인을 받기로 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때(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담보요구권 ☐ 시내환급시 외국인관광객의 반출확인을 위해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보 요구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1. 이후 최초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1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반출확인방법

(외국인관광객특례규정 제9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외국인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환급액 1만원 미만 소액구매 물품에 대한 반출확인방법 간소화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관장의 반출확인방법 ○ 환급액에 관계없이 전량 확인하고 확인인 날인	○ 환급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반출확인 절차 생략하고 확인인 날인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반출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외국인관광객특례규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영세율)신고 및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첨부서류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가가치세 신고시(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시)첨부서류 ☐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환급창구운영 사업자로부터 환급·송금증명서를 전송 받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1. 이후 최초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3 제주도여행객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를 미화기준으로

(제주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제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현행 판매 및 구입한도가 원화 기준이어서, 동일한 상품도 환율변동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안정적 면세점 운영을 위한 기준화폐 변경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물품 판매한도 ☐ 품목당 40만원 이하	☐ 품목당 US\$400 이하
☐ 면세물품 구입한도 ☐ 1인당 40만원 이하	☐ 1인당 US\$400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문의사항 : ☎ (02) 397-7546~50

개별소비세법

1.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78
2.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79
3. 주한외교관용 자동차 석유류 면세절차 개선 4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481
2.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482
3.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83
4. 면세유 관리시스템 구축 484

증권거래세법

1.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 연장 485
2.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 연장 486

인지세법

1. 농·수협 등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 487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인지

주요 개정 내용

<개별소비세 분야>

-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주한외교관용 자동차 석유류 면세절차 개선

<교통·에너지·환경세 분야>

-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으로 택시업계의 지속적 지원
- 면세유 공급실적 관리 및 전산대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면세유 관리시스템 구축

<증권거래세 분야>

- 중소·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자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을 연장
- 금융회사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을 연장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1614호) : 2013.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8호) : 2013.2.15. 공포

01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및 대기오염 억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 1,001~2,000cc 5% 2,000cc초과 7%('13년), 6%('14년), 5%('15년~), ☐ 면세한도 : 대당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 ☐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2015.12.31.(3년 연장)

02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제3항)

가. 개정취지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1회 입장시 1만2천원) 면제 ○ 적용기한 : 2012.12.31.	○ 적용기한 : 2015.12.31.(3년 연장)

03 주한외교관용 자동차 석유류 면세절차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4)

가. 개정취지

- 외교관용 면세유 구매절차 개선 및 관리 체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한 외교관·공관용 자동차 석유류 면세절차 ○ 주유소(판매자)는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구입추천서를 받고 면세유 공급 ○ 제조자는 주유소로부터 구입추천서를 취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류세 환급 신청	○ 구입추천서 또는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면세유 공급 ※ 면세유 공급절차 ① 외교관용 면세유 구매카드 발급 ② 외교관은 면세유 구입시 카드 사용 ③ 카드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류세 환급 신청 ○ 카드 발급시 외교부장관의 적격대상자 확인 등 필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1. 이후 구입하는 유류분부터 적용

01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000cc 미만 경차 사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 환급액(연간 10만원 한도) -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 - LPG 부탄 : 리터당 161원 ○ (적용기한) 2012.12.31. ○ 환급액 산정기간 - 2011.1.1.~12.31. - 2012.1.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014.12.31. ○ 환급액 산정기간 - 2013.1.1.~12.31. - 2014.1.1.~12.31.

02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도서지역 주민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2015.12.31.

03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택시업계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감면금액) LPG 부탄 개별소비세 40원/kg(23원/ℓ) ☐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2015.12.31.

04 면세유 관리시스템 구축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가. 개정취지

- 면세유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면세유 공급실적 관리 및 전산대사를 통한 부정 수급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청은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 국세청장은 면세유 관련기관 등에 대해 면세유 공급실적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 (자료 제출기관) 중앙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해운조합 등 - (제출자료 종류) 농·어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 거래내역, 외항선박용 선적확인서 발급내역 등 ○ 관련기관은 국세청장의 자료 제공 요구에 협조

증권거래세법

01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제2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창업자,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의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 기한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회사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014.12.31.

02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 제2항 제12호)

가. 개정취지

- 금융지주회사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세제지원 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 ·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2015.12.31.

인지세법

01 농·수협 등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농·어민 등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지세 면제 대상 ○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예금, 적금증서 및 통장 ○ 농어촌정비·농지은행·농촌주택 개량·농지조성사업 등 관련 서류 ○ 중소기업 창업관련 용자증서, 통장, 계약서 등 ☐ 일몰 : 2012.12.31.	☐ 일몰연장 :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재 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황 중 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필

● 문의사항 : ☎ (02) 397-7552~4

1.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492
2. 탈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 확대	494
3. 모든 사업소득자에 대한 EITC 적용 확대	495
4. 사업자의 연간 총소득합계액 산정방법 변경	496
5.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	497
6.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	498
7.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보완	499
8. 배우자 사망시 판정기준 보완	501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6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까지 확대
- 기초 수급자의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탈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 확대
-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확대적용함에 따라 연간 총소득합계액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고소득전문직사업자는 EITC 적용대상 사업자에서 제외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보완, 신청서류제출의무 완화 등을 통하여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을 개선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4호) : 2013.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8호) : 2013.2.15. 공포

01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적용하되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고소득전문직 사업자*를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간이과세 제외 전문직 사업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을 것 <신 설>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등 기타사항은 무자녀 부부가구와 동일								
※ 무자녀 부부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 등</th><th>근로장려금</th></tr> </thead> <tbody> <tr> <td>600만원 미만</td><td>총급여액 등 × 7/60</td></tr> <tr> <td>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td><td>70만원</td></tr> <tr> <td>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td><td>(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7/40</td></tr> </tbody> </table>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6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7/40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6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7/40								

종 전		개 정
※ 무자녀 부부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6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7/40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		○ (좌 동)
○ 1세대 전원이 무주택(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1주택은 허용)		
○ 세대원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02 탈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의 신청 제외자 ○ 신청일 직전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자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탈 기초수급자에 대한 요건 완화 ○ 신청년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자 * 다만, 1012년도중 동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지 아니한 자는 2013년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받았더라도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 적용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03 모든 사업소득자에 대한 EITC 적용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적용하되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고소득전문직 사업자*를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간이과세 제외 전문직 사업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EITC 적용 사업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적용대상 확대 ☐ 모든 사업자 - 다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04 사업자의 연간 총소득합계액 산정방법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소득률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조정률 설정함으로써 총소득합계액 산정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간 총소득합계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다음의 소득을 합산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기타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다만,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은 수입금액	○ (좌 동) ○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table border="1"> <thead> <tr> <th>업 종</th><th>조정률</th></tr> </thead> <tbody> <tr> <td>도매업</td><td>20%</td></tr> <tr> <td>농·임·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td><td>30%</td></tr> <tr> <td>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td><td>45%</td></tr> <tr> <td>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td><td>60%</td></tr> <tr> <td>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td><td>75%</td></tr> <tr> <td>부동산임대업, 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내 고용활동</td><td>90%</td></tr> </tbody> </table>	업 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30%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내 고용활동	90%
업 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30%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내 고용활동	9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05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모든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함에 따라 사업자인 배우자(고소득 전문직 제외)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총급여액 등에 포함하고,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미등록사업자의 부정수급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대상 소득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 소득 또는 사업소득	☐ 제외 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 i)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ii) 배우자(근로장려세제 적용배제 사업자인 배우자에 한함)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iii)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사업소득 - 다만,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자 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경우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06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100조의7 제2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근로장려금 신청시 서류제출의무를 완화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미제출시 전세금 간주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 형제자매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세금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 (원칙)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사본의 금액에 따라 평가 ○ (예외) 사본 미제출시 또는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임차시 - 기준시가의 50/100 이내의 국세청장 고시금액으로 평가	☐ 평가방법 개선 ○ (원칙)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60/100 이내의 국세청장 고시금액)으로 평가 ○ (예외) 신청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금액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 - 다만,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주택 임차시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07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100조의8)

가. 개정취지

-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 제고 및 1세대 내 2인 이상 신청시 처리규정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 부부 중 주소득자가 신청 ○ 거주자 사망시 거주자의 상속인이 신청 가능 <신 설> ○ 주소득자 결정 방법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총급여액 등이 같은 경우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신 설>	☐ 신청기준 명확화] ○ (좌 동) ○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시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주소득자 변동시 기준 명확화] - (좌 동) - 근로장려금 결정 후 주소득자 변동 사유 발생시에도 결정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종 전	개 정
<신 설>	☐ 가구단위 신청 명확화 ☐ 1세대 내 2 이상 거주자가 신청시 우선 순위에 따른 거주자 1인이 신청한 것으로 봄 1. 상호합의로 신청인으로 정한 자 2.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2013 개정세법 해설

인 쇄	2013년	4월	일
발 행	2013년	4월	일

발행처 국세청 법규과

-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 (☎ 397-7535)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 * 본 책자는 개정된 세법내용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 중 개정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법령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